

2014 년도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2014. 12.

환경노동위원회



#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	5
2. 감사기간 .....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5
4. 감사반의 구성 .....	7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10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	13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	16
2) 고용노동부 소관 .....	29
3) 기상청 소관 .....	41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44
2) 고용노동부 소관 .....	134
3) 기상청 소관 .....	216



##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4. 10. 7(화) ~ 10. 26(일) (20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p><b>1. 환경부</b></p> <p>가. 본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p> <p>(2) 국립환경과학원</p> <p>(3) 국립생물자원관</p> <p>(4) 국립환경인력개발원</p> <p>(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p> <p>(6) 화학물질안전원</p> <p>(7) 한강유역환경청</p> <p>(8) 낙동강유역환경청</p> <p>(9) 금강유역환경청</p> <p>(10) 영산강유역환경청</p> <p>(11) 수도권대기환경청</p>	<p><b>3. 고용노동부</b></p> <p>가. 본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노동위원회</p> <p>(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p> <p>(2) 최저임금위원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p> <p>(4) 고용보험심사위원회</p> <p>(5) 서울지방고용노동청</p> <p>(6) 중부지방고용노동청</p> <p>(7) 부산지방고용노동청</p> <p>(8) 대구지방고용노동청</p> <p>(9) 광주지방고용노동청</p> <p>(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p>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

<p>(12) 원주지방환경청                  (13) 대구지방환경청                  (14) 새만금지방환경청</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한국환경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립생태원</p> <p><b>2. 기상청</b></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국립기상연구소                  (2) 부산지방기상청                  (3) 광주지방기상청                  (4) 대전지방기상청                  (5) 강원지방기상청                  (6) 제주지방기상청                  (7) 국가기상위성센터                  (8) 기상레이더센터                  (9) 항공기상청</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한국기상산업진흥원</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노사발전재단                  (1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1) 한국잡월드                  (12) 건설근로자공제회</p> <p><b>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b></p>
---	--

#### 4. 감사반의 구성

#####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반장	김영주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감사위원	권성동 위 원	(새누리당)
"	김용남 "	"
"	문대성 "	"
"	민현주 "	"
"	양창영 "	"
"	이자스민 "	"
"	주영순 "	"
"	최봉홍 "	"
"	이인영 위 원	(새정치민주연합)
"	우원식 "	"
"	은수미 "	"
"	이석현 "	"
"	장하나 "	"
"	한정애 "	"
"	심상정 "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  
김원모 (입법조사관)  
김정규 ( " )  
류재근 ( " )  
유재원 ( " )  
김형진 ( " )  
정원철 ( " )  
박양숙 ( " )  
임성현 ( " )  
백호열 ( " )  
박나경 ( " )  
문유선 (입법조사관보)  
신민철 ( " )  
홍영희 (주 무 관)  
강량인 ( " )  
이현진 ( " )

다. 속 기 사 : 김은경, 황유진, 김나영,  
백종인, 김진주 속기주무관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철희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새누리당
함경우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
임보라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변제준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김종욱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새정치민주연합
정길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신동림	보좌관 (김영주 위원장실)
권통일	보좌관 (권성동 위원실)
권혁식	보좌관 (김용남 위원실)
서상열	보좌관 (문대성 위원실)
조재한	보좌관 (민현주 위원실)
김진흥	보좌관 (양창영 위원실)
김성훈	보좌관 (이자스민 위원실)
오영하	보좌관 (주영순 위원실)
백은상	보좌관 (최봉홍 위원실)
박동철	보좌관 (이인영 위원실)
서준오	보좌관 (우원식 위원실)
김철희	보좌관 (은수미 위원실)
정의일	보좌관 (이석현 위원실)
송용한	보좌관 (장하나 위원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신언직	보좌관 (심상정 위원실)

## 5.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7일 (화)	10:00	환경부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10월 8일 (수)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10월 9일(목)		공 휴 일		
10월 10일 (금)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청회의실 (서울)	
10월 11일(토) ~ 10월 12일(일)		공 휴 일		
10월 13일 (월)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0월 14일 (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강유역환경청 (하남)	* 감사후 시찰 (팔당상수원)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5일(수)		자 료 정 리		
10월 16일 (목)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 회	
10월 17일 (금)	11:00	국립생태원 시찰(충남 서천)		
10월 18일(토) ~ 10월 19일(일)		공 휴 일		
10월 20일 (월)	1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 회	
10월 21일 (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10월 22일 (수)	10:00	수도권매립지 시찰		
10월 23일 (목)	10:00	환경부	국 회	확인감사
10월 24일 (금)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확인감사
10월 25일(토) ~ 10월 26일(일)		공 휴 일		

## 6. 일반증인 출석현황

###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7	6	13
출 석	5	3	8
불 출 석	2	3	5

###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6	4	10
출 석	6	4	10
불 출 석	0	0	0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14. 10. 7(화)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강영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장	-환경·안전분야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과 일방적인 산업계 요 구수용 태도의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방침	X
참고인 (2명)	김범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하천호수학회장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진 행상황 청취 -조사 진행상의 어려운 점과 개선 방안 논의	X
	박대규	충남 홍성군 소재 석면광산 인근 마을이장	-충남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석면 에 의한 질병 및 피해사항 청취	X

■ 2014. 10. 8(수)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1명)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개선과 조사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장에서의 장 애인 인권침해 사례	○

2014. 10. 23(목) 환경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6명)	김명수	(주)영풍제련소 대표이사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
	길준영	램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불산 유출사고 관련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협회장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관련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관련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정책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관련	○
	강영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장	-환경안전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관련	○
참고인 (4명)	문영철	금산군 군북면 불산안전대책위 사무국장	-불산 유출사고 관련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내성천 생태계보전을 위한 영주댐 운영 방안 청취	○
	김성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관련	○

■ 2014. 10. 24(금) 고용노동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6명)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조선사업본부장)	-현대중공업 근로자 산재 관련	○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노무부문)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 관련	○
	최주식	LG U+ 부사장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조합 수시감독 부실 관련	○
	경상현	LG U+ 지부장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조합 수시감독 부실 관련	○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대우건설 근로자 산재 관련	○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안전부문)	-롯데건설 근로자 산재 관련	○
참고인 (3명)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	-SK하이닉스 백혈병 관련	○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현대중공업 근로자 산재 관련	○
	이무상	SKB 컴피아 직원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조합 수시감독 부실 관련	○

##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 1) 환경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p>▶ 환경부 본부 ◀</p> <p><b>【공통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li><li>(2) 고위공직자 재취업관행 개선 필요</li><li>(3)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li><li>(4) 환경통계에 대한 재분석 기준 마련</li><li>(5) 환경 관련법 관련 의제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li><li>(6)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양한 참여 보장 필요</li><li>(7) 무분별한 규제완화 자제 필요</li><li>(8) 연구용역 완료 전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완화 발표 문제</li><li>(9)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 연구조사 필요</li><li>(10) 체계적인 뉴트리아 서식지 확산 방지 및 퇴치 계획 필요</li><li>(11)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li></ul> <p><b>【상하수도 부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싱크홀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li><li>(2) 노후 상하수도관 및 노후 정수장 효율적 관리 필요</li><li>(3) 상수도 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관리 필요</li><li>(4) 가정 수도물 수질조사에 총트리할로메탄 포함 필요</li><li>(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장비기준 개선 필요</li><li>(6) 비인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li><li>(7) 상수원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필요</li><li>(8)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 필요</li></ul>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9) 생수제조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10)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필요
- (11) 노후주유소 및 산업시설 환경조사 강화 및 정화노력 필요
- (12) 산업단지내 토양환경조사를 통한 오염 조기발견 필요
- (13)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 정밀조사 필요
- (14) 가축매몰지 침출수 관련정보 공개 및 실태조사 필요
- (15)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수질 부문】

- (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필요
- (2)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보호 대책마련 필요
- (3) 생물지표종 등을 고려한 수생태계 평가기준 마련 필요
- (4) 조류경보 발령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 (5) 남조류 독성의 생태계 및 위해성에 대한 연구 강화
- (6) ‘수계별 조류발생 및 거동’ 토론회 문건 조사결과 제출
- (7)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필요
- (8) 환경부 독자적인 4대강종합의견서 작성
- (9) 4대강 수질악화 관련
- (10) 4대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필요
- (11) 유속유량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협업 강화
- (12) 규제중복해소과정에서 관리대상 누락 방지
- (13) 공단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폐기물 부문】

- (1)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제정 촉구
- (2) 소각장반입 철제드럼통 관리제도 개선 필요
- (3) 석탄재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석탄재 재활용 방안 강구
- (4)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의 국내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마련 필요
- (6) 영농폐비닐수거사업 관련 환경부 감사 실시 필요
- (7)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관련 대책 마련
- (8) 폐건전지 재활용 수거율 및 재활용 확대 방안 마련
- (9) 폐휴대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10) 폐전자제품 무상수거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재사용방안 마련
- (1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보고체계 개선 필요
- (12) 폐전자제품 및 자동차 폐냉매 회수관리 강화
- (13)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14)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15)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방법 다양화 검토
- (16) 재제조 산업 활성화 필요
- (1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갱신제 도입 검토
- (18)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 강화
- (19) 제주 폐기물 광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확충 필요
- (20)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 (21) 지자체별 쓰레기 봉투가격 수정방안 마련
- (22) 제과업체의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 (23) 유기성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사업 평가과정 조사

### 【대기 부문】

- (1) 강화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계획 수립 필요
- (2)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오염물질 실태파악 필요
- (3) 경유차 조기폐차 전문업체 선정에 재활용시설 비중 강화
- (4)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필요
- (5) NO<sub>x</sub> 저감장치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른 사후조치 필요
- (6) 경유택시 도입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
- (7) 수입차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8) 매연저감장치의 필터 청소비용 현실화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 (9) 굴뚝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대책방안 필요
- (10)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총체적 개선 필요
- (11)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관련
- (12)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신속한 설치 필요
- (13)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운영 개선
- (14) 탄소배출권 가격 적정수준 유지 필요
- (15) 한반도 온난화 물질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16)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량 측정 정확성 제고 필요
- (17)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과정 주체 다변화

### 【자연 부문】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차단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 나고야 의정서 비준 준비 관련
- (3)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식 개관을 위한 노력 필요
- (4) 수렵면허 재발급 기준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5) 일본 타이치 고래에 대한 수입불허 대책 필요
- (6) 육·해상 생물의 수입·관리를 위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 필요
- (7) 에볼라바이러스 감수성 동물들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필요
- (8) 야생생물 사후관리 발전 방안 마련
- (9)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 적극 마련
- (10) 생물다양성 수준 증진 실천 방안 마련
- (11)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
- (12)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대책마련 필요
- (13) 케이블카(삭도) 지침 및 가이드라인 관련
- (14) 케이블카 설치 관련
- (15) 무분별한 ‘숲가꾸기 사업’ 개선 필요
- (16)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 보전조치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7) 추가적인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관광단지 내실화 추구
  - (18) 보호지역 확대 의무 실행방안 마련
  - (19)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 (20) 백암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 (21) 하천도 습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22) 임진강하구하천정비사업 관련
  - (23)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 필요
  - (24)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자 징계 요구 및 대책마련
  - (25)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경위 파악
  - (26) 2012년 철회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추진 검토
- 【환경보호일반 부문】**
- (1) 조달청 녹색인증기술 가점 폐지에 대한 대응 필요
  - (2) 환경유해물질 부적합제품 유통관리 필요
  - (3)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개선 관련 자가관리계획 정책의 동참 확대 필요
  - (4)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블랙카본에 대한 대책 마련
  - (5)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필요
  - (6)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7)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필요
  - (8) 카나리아 측정기 보급사업 재검토 필요
  - (9) 빛공해 등의 생활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 (10)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유해 가능성 연구
  - (11) 아토피성 피부염 사전예방조치 필요
  - (12) 라돈관리 종합대책 강화 필요
  - (13) 방사선 노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부의 예방·관리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4) 석포제련소 지역주민에 대해 건강 유해도조사 실시
- (15) 석면지질도 공개 세부계획 공개
- (16) 자연발생석면지질도 공개 후 후속조치 관련
- (17) 석면 1% 이상 검출된 지역에 대한 토양 정화조치 및 주민 건강조사 실시 필요
- (18) 석면관리법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19)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필요
- (20) 친환경상품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2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마련 필요
- (22)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23) 화학사고 대응에 주민 참여방안 마련
- (2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 부처들의 통보의무 이행 방안 마련
- (25) 화학물질 사고 시 출동, 안전장비, 주민 훈련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 (26) 해외직구 품목 중 페인트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27) 미용업소 실내공기질 개선
- (28)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안 마련
- (29)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필요
- (30) 사전예방을 위해 고위험우려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 필요
- (31) 유해화학물질지정 확대 필요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 (1) 반강제적인 본부과건 축소 필요
- (2) 대기·수질·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3)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한 조치 마련
- (4)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 (5) 한국환경공단의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경부 내부감사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6)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관련 감사 필요
- (7)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도 점검 및 통폐합 필요
-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고발자 집단따돌림 조사 필요

###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 (1) 지자체 공무원의 단속교육 강화를 통한 단속률 제고 필요
- (2) 지방환경청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
-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에 따른 지방부담 조정 필요
- (4) 환경행정의 무분별한 지방 이양 방지

### ▶ 지방청 공통사항 ◀

- (1) 환경감시관의 처우 개선 필요
- (2) 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3) 휴지광산의 광해방지 대책 필요
- (4) 구제역 가축매몰지 수질조사 철저 필요
- (5) 수질오염사고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책 필요
- (7) 산업단지 등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제고 필요
- (8) 도료함유기준 확대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필요
- (9) 멸종위기종관련 체계적인 관리 필요
- (10)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동물카페 및 실내동물원 조사
- (11)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운영 개선 필요
- (12) 클린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3) 화학물질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수행 대책 필요

### ▶ 4대강 유역청 공통사항 ◀

- (1)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인프라 개선 필요
- (2)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검토 필요
- (3) 법적근거 없이 매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의 정비 필요
- (4)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준수 필요
- (6) 불법 낚시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 필요
- (7)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견에 KEI의견 반영할 것

### ▶ 한강유역환경청 ◀

- (1) 노후하수관에 대한 관리 필요
- (2) 한강 유역 폐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3) 경기도 미선나무 자생지 보호 대책 필요
- (4) 군포 송정지구 멸종위기종 맹꽂이 보호대책 마련
- (5) 팔당호 생태학습선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관리 강화
- (2) 총체적으로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 (3) 낙동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갈등 해소 필요
- (4) 뉴트리아 퇴치 예산 필요
- (5) 통영골프장 토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6) 미륵도 골프장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준수
- (7)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수질 악화 대책 마련 필요
- (8)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9)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1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 필요

### ▶ 금강유역환경청 ◀

- (1) 금산군 램테크놀러지 불산유출사고 관련
- (2) 홍성일반산업단지 건설지역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필요
- (3)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동북호 주변 지자체간 갈등해소방안 마련 필요
- (2) 합동방재센터 파견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3) 제주시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필요

### ▶ 원주지방환경청 ◀

- (1) 포스코 폐놀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2) 환경감시단 신설 필요
- (3) 제천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 SNS 홍보단 운영 활성화 대책 필요
- (5) 친환경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노력 제고
- (6) 가리왕산 훼손에 대한 대책 필요

### ▶ 대구지방환경청 ◀

- (1) 낙동강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오염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3) 효율적인 가시박 제거방안 마련 필요
- (4)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5) 4대강 사업이후의 생태계 보전대책 필요

### ▶ 새만금지방환경청 ◀

- (1) 분뇨처리비용지원 축소 필요

### ▶ 수도권대기환경청 ◀

- (1) 합리적인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필요
- (2) 저공해자동차 구입 목표달성 대책 마련 필요
- (3)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를 앞장서야 할 필요
- (4)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환경분쟁조정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2) 환경피해 배상금 현실화 필요
- (3) 원인재정 도입 필요
- (4) 원인자부담 조사 또는 직권조사 후 구상 제도 필요
- (5) 재정위원 구성시 전문성을 고려한 선임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6) 분쟁기간 중 담당 공무원 강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 (7)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8) 높은 공공기관 불복률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9)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분쟁기간 장기화 대책마련 필요
- (10) 밀양 송전탑 재정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1) 사전예방적 연구 강화 필요
- (2) 가축분뇨 점오염원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3) 여수 GS칼텍스 원유 유출사고 대응 미흡
- (4)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강화 필요
- (5) 습지관리 체계의 인원·예산·권한 강화 등의 방안 검토
- (6) 미세먼지 예보 등 관리강화 필요
- (7) 전자파 관련 조사 및 연구 필요
- (8) 블랙카본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9) 화학사고 관련 지휘체계 단일화 및 신속한 사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 (10) 하자 있는 특수화학분석차량 구매 문제
- (11) AI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 필요
- (12) CMIT/MIT 물질에 대한 연구 필요
- (13) 만성흡입독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조 필요
- (14)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필요
- (15) 타이어 화재로 인한 폐수유입 연구 필요
- (16) 홍성일반산업단지 자연발생석면 대책 마련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 (1)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 (2) 멸종위기종 수입에 대한 자원관 역할 철저
- (3) 멸종위기종 수입에 대한 자원관 입장 변화 문제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4) 비효율적 연구용역 감소 필요
- (5) 기관장 수시교체 문제 개선 필요
- (6) 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필요
- (7)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존 및 노력 필요
- (8) 스마트폰 앱 활용도 저조
- (9) 유전자원 무상분양 시스템 개선 필요
- (10) 해외반출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교육을 환경인력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개편 필요
- (2) 전임강사 확보 필요
- (3) 실험기자재 관리 및 교육계획 개선 대책마련 필요
- (4) 석면감리원 선발기준 및 교육제도 개선 필요
- (5) 환경기술인에 대한 사이버교육 점검 필요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2) 비정규직 비율 축소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1) 화학사고 대응 관련
- (2) 산단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마련
- (3) 화학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4) 스마트폰 앱 활용도 저조
- (5)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지침 마련시 법령준수 필요

### ▶한국환경공단◀

- (1) 발주사업 계획준비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 (2) 턴키방식의 발주 저감 필요
- (3) 입찰담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 영농폐기물수거사업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농촌폐비닐 수거율 제고 및 장비개선 필요
- (6) 일부 지역 상수도위탁사업 갈등 해소
- (7) 노후상수관 재질 개선 필요
- (8) 실내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효율성 향상 필요
- (9) 전기차 충전기 및 관리 인력 확충 등 개선 필요
- (10) 퇴직 앞둔 임원에 대한 최고위과정 지원 개선 필요
- (11) 굴뚝 TMS 국산화율 제고 필요
- (12) 완구류 과대포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준비에 필요업무 보충 필요
- (2) 국립공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 (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관련 대책 마련 필요
- (4)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내실화 필요
- (5) 대피소 낙뢰사고 대비 필요
- (6) 대피소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7)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문인력·장비 확충 필요
- (8)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9)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 대책 필요
- (10) 사진전 입상을 위한 자연훼손 대책 마련 필요
- (11)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역 확대 필요
- (12) 지리산 국립공원 관련
- (1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정책 신중한 검토 필요
- (14) 각 사무소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마련 필요
- (1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확충 방안 마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관련
- (2) 드림파크문화재단 전문위원 채용 관련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3) 내부고발자 징계 관련
- (4) 음식물탈리액 매립지공사가 직접 관리 필요
- (5) 안암도 우수지 수질악화 대비책 마련 필요
- (6)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대책 마련 필요
- (7) 일반하역장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대책마련 필요
- (8)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활용방안 마련
- (9) 드림파크 골프장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그린워싱 관련
- (2) R&D 성과 관련
- (3) 환경인증마크 제도 개선 필요
- (4) HCFC-123 사용 소화기의 친환경제품 인증 개선 필요
- (5)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기간연장 및 홍보 필요
- (6) 신기술 평가제도 활용실적 제고 마련 필요
- (7) 녹색매장 지정제도 확대 필요
- (8)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개선 필요
- (9) 이차보전 사업의 재정융자 방식 전환 필요
- (10)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사업에 대기업 비중 과다
- (11) 유기성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 개발사업 관련

### ▶국립생태원◀

- (1)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상생 발전방안 강구 필요
- (2) 국립생태원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 기초생태조사 확대 필요
- (4) 생태원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필요
- (5) 생태원 전시동물의 편중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 현실적인 뉴트리아 퇴치방안 연구 필요

## 2) 고용노동부 소관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 고용노동부 본부 ◀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부문】

- (1)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
- (2) 여성의 고위직 진출 노력
- (3)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제고
- (4) 제도 취지에 맞는 개방형직위제 운영
- (5) 퇴직 후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 마련
- (6) 공정한 인사관리
- (7)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상담원 처우 개선
- (8)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 관리 강화
- (9)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확대
- (10) 행사 관련 예산 절감
- (11) 제주고용센터 청사확보 지원 필요
- (12) 전산조회시스템 개선

##### 【고용 부문】

- (1)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관리 강화 필요
-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리 강화
- (3)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4)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강구
- (5) 희망리본사업 지속 필요
- (6) 기술자격체계 개선
- (7) 두루누리사업 방향 재설정
- (8)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부정행위 엄중 처벌
- (9) 세월호 관련 실업자 대책 마련
- (10)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노동 부문】

- (1) 화물운송근로자의 불공정 계약 시정
- (2) 백화점, 마트 직원 인권침해 취업규칙 개선
- (3) 사업장 근로관계법령 위반 시정 및 해소
- (4) 경비근로자 부당계약 문제 해결
- (5)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외국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6) 체당금 관리감독 강화
- (7) 사업장 전자노동감시 문제 해결촉구
- (8) 임금체불 문제 해소 방안 모색
- (9) 근로감독 및 처벌에 관한 절차 개선
- (10) 실험실 근무 연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1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강화 및 통근재해 보호 확대
- (12) 부당해고 사업장 근로감독 필요
- (13) 노동부를 사칭한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치
- (14) 희망퇴직, 명예퇴직 관련 제도개선
- (15)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 (16) 현장실습생 보호 필요
- (17) 노동관계법 준수
- (1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절
- (19) 직업훈련교사의 처우 개선
- (20)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준수
- (21)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22)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존치
- (23) 비위 연루 노무사 등 근절대책 마련
- (24) 사내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 (25) 직무성과급 제도 도입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6) 공공부문 임금구조 개편
- (27) 퇴직연금 제도개선
- (28) 법규위반 제재원칙 및 자료 DB구축
- (29) 포괄임금제도 개선
- (30) 초단시간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 (31)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 (32) 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금 지출관리 필요
- (33) 근로자 불법과건에 대한 조치
- (34)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 차별 해소
- (35)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 (36) 기간제근로자 제도 개선
- (37) 노동교육 활성화
- (38) 원자력발전 분야 간접고용 실태 조사
- (39) 학교 당직기사 근로조건 향상
- (40)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노동법체계 마련
- (41) 부당노동행위 엄단
- (42)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근절
- (43) 민사소송(손배가압류)을 통한 노조탄압

### 【인력수급 부문】

- (1) 해외취업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내실화
- (2)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리 방안 마련
- (4) 사회적기업 질적 수준 제고
-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개선
- (6)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7)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 (8) 직장어린이집 내실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9) 장애인인권 보호
- (10) 고용허가제 개선
- (11) 출국만기보험 제도 개선
- (12)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 (1) 산재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2) 산업재해근로자의 업무복귀 문제 해결
- (3)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 (4)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근절
- (5) 고용·산재보험 미환급금 업무 개선
- (6) 개별사업장 산재 사고 조사 및 대책 마련
- (7)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
- (8)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 (9)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 (10) 보건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 (1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 강화
- (12) 크레인 줄걸이 작업 관련 산재예방 대책 마련
- (13)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검토
- (14)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대책 마련
- (15)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 (16) 사내하도급근로자 산업재해예방
- (17) 작업중지권 제도 개선
- (18)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19) 개별실적요율제 보완
- (20) 판매직 사원 산업재해 예방
- (21) 감정노동자 보호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리 철저
- (2)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3) 내일배움카드제 실효성 강화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준 실태조사
- (5)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6)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실시
- (7) 알바신고센터 이용촉진
- (8)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9) 장시간근로 실태개선
- (10) 산재은폐(미신고) 사업장 감독 실시
- (11) 기간제법 관련 법령위반 감독
- (12) 산재예방대책 수립
-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부정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
- (2) 호텔 연회장, 예식장 아르바이트 근로감독
- (3)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청소근로자 대량해고사건 조사
- (4)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관리 철저
- (5) 노무법인 검사 및 감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아시안게임선수촌 현장실습생 근로에 대한 조사
- (2) 출판전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리감독
- (3)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4) 임금체불사건 처리방안 모색
- (5) 강원랜드, 태백관광공사의 임금체불 사건 조사
- (6) 고양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7) 속초의료원 노사갈등 해결 필요
- (8) 서울대병원 청소용역 수행회사 근로감독 실시
- (9) 케이엔엘KNL물류 근로관계문제 해결
- (10) 레이테크코리아 특별근로감독
- (11) 동양시멘트 하청기업 불법파견문제 해결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방안 마련
- (2) 선박건조업 퇴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필요
- (3)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
- (4) 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해결
- (5) 현대중공업 산재 사건 과태료 감경 문제
- (6)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조사
- (7)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8)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 정리해고 문제 해결
- (9) 부산합동양조 노동쟁의 장기화로 인한 대책 마련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청소·경비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 (2) 직지농협 성폭력·인권유린 사건 조치 촉구
- (3) 영풍석포제련소 특별감독 실시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2) 전남대학교 간호사 유방암 발병 문제 해결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2)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
- (3) 현대제철 당진일관제철소 근로문제 해결
- (4)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사 문제 해결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5)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특별근로감독

▶ 중앙노동위원회 ◀

- (1) 노동위원회 공정성·객관성 제고
- (2)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3) 차별시정사건 판정문 작성 시 지급금액 명시
- (4) 공인노무사에 의한 무료 권리구제대리 지원기준 변경

▶ 최저임금위원회 ◀

- (1) 최저임금위원회의 능동적 업무수행 제고
- (2)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1) 재심위의 통계구축과 신뢰성 회복 필요
- (2) 재심사위원회 심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 강화
-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3) 청년고용 제고
- (4) 임차료 등 예산절감

▶ 근로복지공단 ◀

- (1)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 문제 해결
- (2) 부정수급 관련 직원 징계양정 강화
- (3) 안양 산재사건 비리 문제 해결
- (4) 산재보험료 과납액·미환급금 등 관리 강화
- (5) 산재심사시스템 개선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적용 확대
- (7)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구성 및 소속의사 급여체계 개선
- (8) 사무장 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보완
- (9)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0)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인정기준 개선
- (11) 산재보험가입의무 활성화
- (12)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 진상조사
- (13) 산재병원 경영수지 악화 대책마련
- (14) 외국인 근로자 귀국 후에도 산재인정 검토필요
- (15)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선
-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인력 확충
- (17)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 (18) 구상권 행사를 통한 체당금 회수 강화
- (19) 화상약재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적정성 검토
- (20) 근로자 대상 용자사업 개선
- (21)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 해소
- (2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인력 확충
- (23) 산재장해등급 조정 관련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2) 울산공업단지 산재예방대책 마련
- (3)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 (4) 제도 취지에 맞는 개방형직위제 운영
- (5) 택배 및 쿠팡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7)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련 제도개선
- (8) 산재예방요율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 (9) 서비스업 산재예방 대책 마련
- (10) 직원 전문성 및 조직몰입도 향상
- (11) 감정노동자 보호
- (12) 케이블설치 노동자 보호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3) 질식재해 예방
- (14) 발암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
- (15)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의 불균형 해소
- (16)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범위 확대
- (1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기준 개선
- (18) 산재은폐 근절대책 마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기능장 시험 부정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2) 한국폴리텍 의존 최소화
- (3) 해외연수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 (5)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 (6)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 (7) EPS센터 산업재해 접수방안 강구
- (8) 여성임원 확대
- (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통폐합
- (10) 용역업체 지원체계 개선
- (11) 대한민국 명장 활용방안 마련
- (12) 군산지사 신설
- (13) 초단시간근로자 활용 시정
- (14) 외국인근로자 노인요양보험 납부예외제도 홍보 필요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환
- (2) 판로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
- (3)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 (4)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성과 미흡
- (5)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면밀한 추진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 한국폴리텍대학 ◀

- (1) 취업의 질적 제고
- (2) 안성캠퍼스 전환예산 확보 노력
-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사업 관리 강화
- (4)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 근절방안 강구
- (5) 현장실습생 보호대책 강구
- (6)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 (7) 교직원에 대한 엄정한 관리
- (8)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
- (9) 학생의 정치단체 가입 및 활동금지 규정 개정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직업교사 양성 노력
- (2) 현장실습생 보호대책 강구
- (3) 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해소방안 마련
- (4)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확대
- (5) 학생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개정

### ▶ 건설근로자공제회 ◀

- (1)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2) 투자관리시스템 정립
- (3) 공제부금 누락 방지 위한 시스템 강화
- (4) 퇴직임원의 재취업 관련 청탁의혹 조사
- (5) 법인세 신고 오류 관련 방안 마련
- (6) 외부위탁 관련 문제 시정

### ▶ 한국고용정보원 ◀

- (1) 고용창출효과 조사체계 개선
- (2) 외국인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선
- (3) 신직업 개발 체계 개선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4) 개인정보 관리 강화
- (5) 워크넷 내 구인광고 관리
- (6)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 관리 강화
- (7) 무등록 직업안정기관 관리

### ▶ 한국잡월드 ◀

- (1) 협력업체 직원 처우 개선
- (2) 간접고용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 (3) 자체수입 확보 노력
- (4) 미래유망직업 소개 보완
- (5) 고객만족도 제고
- (6) 직업 체험의 다양화
- (7)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 강화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 (2)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 (3) 보조공학기기 재활용률 향상
- (4) 비상사태시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개발
- (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 (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방식 개선
- (7) 이사회 노동계 인사 참여 방안 마련
- (8) 장애인공단 BF 인증 필요
- (9)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 후 적응지도’ 개선
- (10)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노력 필요
- (11) 민간훈련 위탁기관의 평가 지표 개선
- (12)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1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범위 확대
- (14) 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 확충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 노사발전재단 ◀

- (1)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성과 제고
- (2) 독립적 직무수행
- (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화
- (4) 일터혁신컨설팅의 위법성 제거
- (5) 시간선택제일자리 컨설팅 내실화
-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 실효성 제고
- (7) 중장년층 취업률 제고
- (8) 컨설팅 대상 업체 자격요건 재정비
- (9) 컨설팅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10) 동일지역에 소재한 사업별 센터 통합
- (11)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제도 개선
- (12) 노사발전재단 운영에 있어 노사의 역할과 지원 확대

### ▶ 승강기안전기술원 ◀

- (1)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근절
- (2)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 3) 기상청 소관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 (1) 중복업무 수행하는 재단법인 통합 필요
- (2) 기상장비 도입 비리의혹 등으로 기상청은 환골탈태 필요
- (3)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 필요
- (4) 용역계약 과정 개선 및 대상 축소 필요
- (5) 기상청 출연기관 R&D 사업 개선 필요
- (6) 각종 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 발생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상 장비 관련 사항】

- (1) 기상관측기기에 대한 적극적 검정 필요
- (2)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의 신속한 추진 필요
- (3) USN 관측장비 부적절한 설치 시정 필요
- (4) 해양기상관측장비 구매시 제품의 평가 철저 필요
- (5) 기상 라이다 도입 관련
- (6) 기상관측장비 AWS운용 개선 필요
- (7) 기상장비 유지보수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필요

#####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 (1) 기상직 채용시험 공신력 제고 필요
- (2) 국지성 집중호우 전문예보관 양성 필요
- (3) 고위직 여성관리자 목표달성을 위한 준비 필요
- (4) 화산·지진관련 연구사 충원 필요
- (5) 개방형 직위 운영 등 인사운영 개선 필요
- (6) 기상산업진흥원의 인력운용 재정비 필요
- (7) 공공성과 전문성 훼손우려 조직개편 계획 재검토 필요

##### 【기상행정/교육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 (1) 정보보안 대책 마련 필요
- (2) 기상기후아카데미 훈련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3) 기상교육 전문 강사 확보 강구
- (4) 기상학과 졸업생 취업률 제고 대책 마련
-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보/특보 관련 사항】
- (1) 효과적인 폭염지수 개발 및 폭염특보 운영 필요
- (2) 기상특보 정확도 제고방안 마련
- (3) 안개특보 개선방안 마련
- (4)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제공사업 범위 확대 필요
- (5) 이안류 예보시스템 보완 필요
- (6) 태풍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 (7) 용오름 등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8) 공항 예·경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9) 웨비게이션 사업 지속 추진방안 관련
- 【지진·화산 관련 사항】
- (1) 지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2) 화산 폭발 대응방안 연구 필요
- 【용역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사항】
- (1) 청소 등 용역직원 근무여건 개선 필요
- (2) 기상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 (3) 지방기상대 근무직원의 처우개선 필요
- (4) 용역근로자의 노동처우 시정 필요
- 【기타 사항】
- (1) 기상청이 선박 출항관련 가시거리정보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마련
- (2) 기상산업 분야의 독과점 형태 개선
- (3) 기상장비분야의 민간 이양 확대 필요
- (4) 날씨경영인증 관련 민간참여 활성화
- (5)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정확성 제고 대책 마련
- (6) 기후변화감시 적응시스템을 구축

##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7) 가뭄피해 대응체계 마련
- (8) 연구용역 평가 공정성 확보 및 결과활용 제고
- (9) 도시농림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10) 원전 방사능확산모델링 결과 공개 및 원안위 협업 필요

##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환경부 소관

#### ▶ 환경부 본부 ◀

#### 【공통사항】

##### (1)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환경부가 소속 공공기관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전체 국가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비교하면 국가기관 51개 중 27위로서 하위권이므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개선할 것.
- ▶ 국가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녹색제품구매가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구매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부가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에 조치를 취하고, 향후 국가기관 업무평가에 녹색제품구매실적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

##### (2) 고위공직자 재취업관행 개선 필요

- ▶ 최근 5년 동안 환경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81%가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에 재취업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 (3)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 ‘기후변화주간 행사’ 및 ‘세계 물의 날 행사’ 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나 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4) 환경통계에 대한 재분석 기준 마련

- ▶ 각종 부담금 등은 통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계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대기업 집단의 특성별 분류를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통계연보 및 각종 통계분석에 대한 재분석 기준을 마련할 것.

#### (5) 환경 관련법 관련 의제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

- ▶ 다른 법에 환경 관련법과 관련하여 의제처리하는 조항들이 있어,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작업 및 보고를 할 것.

#### (6)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양한 참여 보장 필요

- ▶ 환경부는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어린이활동공간에 추가하려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KS규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삭제됨.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나, 환경부장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경부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7) 무분별한 규제완화 자제 필요

- ▷ 장관이 제1차 환경규제 개혁회의에서 ‘환경보호 849건 중 8%를 올해 안에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환경보호 75%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일률적인 목표를 세운 것은 문제이고, 지나치게 신속히 규제완화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작용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를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도시형공장의 입지규제, 환경영향 평가 절차, 녹지지역안의 공장증설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규제를 할 것.

## (8) 연구용역 완료 전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완화 발표 문제

- ▷ 상수도부근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과공장 외에 몇몇 공장에 대한 입지완화 발표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 (9)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 연구조사 필요

- ▷ 울산공단 내에 석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매설된 기름파이프가 내구연도를 경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연구용역을 할 것.

#### (10) 체계적인 뉴트리아 서식지 확산 방지 및 퇴치 계획 필요

- ▷ 중앙정부의 일관된 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뉴트리아 박멸을 추진하고 있는 바, 환경부가 체계적으로 뉴트리아 서식지 확산방지 및 퇴치 계획을 마련할 것.

#### (11)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 환경부가 운용하는 36개 기상관측기기 중 11개가 ‘기상검정’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시정조치 후 보고할 것.

### 【상하수도 부문】

#### (1) 싱크홀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전문가 확보 및 국토부와의 부처간 협업,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싱크홀의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 노후 상하수도관 및 노후 정수장 효율적 관리 필요

- ▷ 상하수도관 설치시기를 기준으로 노후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에 환경부에서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것.
- ▷ 현행 지자체 하수관거 정비 지원 사업의 사업선정 및 지원 기준에 해당 지역 하수관의 노후 정도를 비중있게 검토할 것.

- ▷ 전국 하수관 평균 노후율이 33%임에 비해 서울은 2배가 넘는 71.3%에 해당하므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인 보조금 편성 실무요령 개정을 2017년까지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개정할 것.
- ▷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상수도관이 노후하여 단수사고가 많고 누수율이 높으므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 상수도 예산이 2005년부터 환특에서 균특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편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 노후화된 정수장, 특히 단순 모래여과시설인 강동정수장이 전국에 71개소나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 (3) 상수도 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관리 필요

- ▷ 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여 통계상으로는 급수인구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실제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 할 것.
- ▷ 수도 보급 지역의 미신고 지하수 관정의 현황 파악 및 수질 검사 실시할 것.
-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급수관 자체를 설치하지 못한 지하수 음용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 급수관 설치를 지원하도록 사업방식 변형 필요



#### (4) 가정 수돗물 수질조사에 총트리할로메탄 포함 필요

- ▷ 4대강사업 이후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고, 이는 상수도관을 거쳐 가정집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하므로, 가정집 수돗물 수질조사 항목에 포함할 것.

#### (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장비기준 개선 필요

- ▷ 하수도 청소에 준설차량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수도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개선할 것.

#### (6) 비인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

- ▷ 인·허가 받지 않은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할 것.

#### (7) 상수원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필요

- ▷ 상수원에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지규제방식을 완화하는 것은 향후 다른 형태의 오염부하량이 적은 기업들의 규제 완화요구가 우려되며, 사고 시 취수원 보호가 어려워지므로 상수원 입지규제완화를 신중히 할 것.
- ▷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조사하고 검토할 것.
- ▷ 내년 이후에 가능하던 입지규제완화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현재 마련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것.

## (8)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 필요

- ▷ 연도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지적건수는 2011년 191건에서 2012년 26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153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불법시설물을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9) 생수제조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는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질검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0)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필요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종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3.3%, 학교 22.6%만이 빗물이용시설 대상에 해당되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다 빗물이용시설 확대하려는 국회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할 것.
- ▷ 한편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11) 노후주유소 및 산업시설 환경조사 강화 및 정화노력 필요

- ▷ 15년 이상 된 노후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실시하고, 초과업체에 대한 신속한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단지내 토양환경조사를 통한 오염 조기발견 필요

- ▷ 오염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을 조기발견하고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3)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 정밀조사 필요

- ▷ 최근 권익위에서 제보를 받고 봉화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농도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였고, 2014년 9월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실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분을 직접 측정된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전체적인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 (14) 가축매몰지 침출수 관련정보 공개 및 실태조사 필요

- ▷ 2011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가축매몰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한 30곳 중 29곳이 토양, 지하수에서 알데히드계 소독제가 검출됨. 이후로는 소독제 성분이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소독제이므로 매몰지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며 알데히드계 소독제를 조사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것.
- ▷ 또한 가축매몰지연구단이 외국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립당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농림부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혹을 증폭시키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 ▷ 가축매몰지연구단에 의하면 퇴비공장 주변토양보다 매몰지주변에서 항생제 수치가 월등히 높으므로 가축에 남아있던 항생제 성분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며, 보건상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매몰지 부지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어기고 상시침수지역인 논 한가운데에 매몰지가 있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 (15)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 2012년에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서 토양·지하수를 조사할 때 필수항목인 TPH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환경관리 기준 자체가 후퇴하고 한국측의 정화부담이 훨씬 커졌는데, 평상시 주한미군의 EGS를 확인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
- ▷ 자자체로 하여금 토양오염이 문제되는 미군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수질 부문】

### (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필요

- ▷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현실에 맞도록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수질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보호 대책마련 필요

- ▶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은 상수원 보호제도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고 역행하고 있는 것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직하류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잠실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친수구역 지정으로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마련 필요
- ▶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 자체재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환경부고시에 맞지 않게 산정한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환경부는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3) 생물지표종 등을 고려한 수생태계 평가기준 마련 필요

- ▶ 2007년 수생태계 평가기준을 BOD 등 기존의 생화학적 기준에서 생물지표종 등 건강성평가로 바뀌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지표가 없이 각각의 측정치만 나열하고 있는바, 각종 평가지수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지수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4) 조류경보 발령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 ▶ 조류경보 발령시 어패류 식용에 대한 주의와 권고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

#### (5) 남조류 독성의 생태계 및 위해성에 대한 연구 강화

- ▷ 남조류 독성의 생태계 및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에 대하여 연구계획을 세울 것.

#### (6) ‘수계별 조류발생 및 거동’ 토론회 문건 조사결과 제출

- ▷ 지난 9월 23일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수계별 조류발생 및 거동’ 토론회 문건의 경위와 실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7)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필요

- ▷ 4대강 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것.

#### (8) 환경부 독자적인 4대강종합의견서 작성

- ▷ 국무총리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환경보호목표를 분명히 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것.

#### (9) 4대강 수질악화 관련

-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조사 보고 등 성격이 다른 3개 기관에서의 연구결과에서 모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하며, 4대강의 근본적인 수질 악화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해 인정할 것.

- ▷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4대강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방안을 마련할 것.

#### (10) 4대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필요

- ▷ 4대강 사업으로 하천수변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녹조, 큰빛이끼 벌레 등 4대강 수생태계 문제가 심각하므로 4대강 생태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1) 유속유량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협업 강화

- ▷ 유속·유량을 관리하는데 있어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4대강 수문 운영 논의기구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부가 수량, 수질을 통합하도록 할 것.

#### (12) 규제중복해소과정에서 관리대상 누락 방지

- ▷ 「수질법」과 중복이기 때문에 4대강 수계법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나, 수계법상 관리대상이던 PCB, 브로모포름 등의 일부 물질이 누락될 것이므로 수질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13) 공단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 설치된 공단 폐수처리시설의 폐수 유입량이 10%에 불과한 곳도 있는 만큼, 적정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폐기물 부문】

### (1)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제정 촉구

-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폐기물 종료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시장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향의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 소각장반입 철제드럼통 관리제도 개선 필요

- ▷ 액상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드럼통을 재활용하려면 세척재 사용업체로 재위탁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재위탁은 불법이라 드럼통이 폐유 등과 함께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각장 반입 철제 드럼통은 소각시설에서 새롭게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3) 석탄재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석탄재 재활용 방안 강구

- ▷ 석탄재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석탄재 전반에 걸친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여 보다 선진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 국내 발생 폐기물은 매립해 버리고, 일본산 석탄재를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하고 있음.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의 국내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

- ▷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조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의 국내 유통이 원천 금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규제 검사를 연 4회로 늘릴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방사선 검사결과 환경방사선량을 초과하면 반송하여 국내산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마련 필요**

- ▷ 보증금이 매년 735억원씩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단체를 신설하고 생산자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지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영농폐비닐수거사업 관련 환경부 감사 실시 필요**

-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영농폐비닐수거사업 관련하여 환경부의 객관적 민간수거위탁자 관리실태, 실제 수거실태, 폐비닐 수거 등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 **(7)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관련 대책 마련**

- ▷ 폐농약용기 중 농약봉지 회수율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농약제품 도·소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폐농약 용기류를 보관할 장소나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 폐건전지 재활용 수거율 및 재활용 확대 방안 마련**

- ▷ 폐건전지 수거율 및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폐건전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정보 공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 폐휴대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불법유통되는 폐휴대폰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사용품의 수출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재사용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0) 폐전자제품 무상수거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재사용방안 마련**

- ▷ 폐전자제품 무상수거제도에 대한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인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스티커 자체에 안내문구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
- ▷ 재사용할 제품을 재활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분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사용할 제품은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보고체계 개선 필요

-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2) 폐전자제품 및 자동차 폐냉매 회수관리 강화

- ▷ 폐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냉매 실회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폐냉매 회수·처리에 대한 연구용역, 지도·점검실적이 전혀 없고 냉매처리단가가 높아 영세한 폐차업체는 대기로 방출하는 등 폐냉매 관리가 총체적 난국이므로, 폐냉매 인계·처리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회수관리를 강화할 것.

### (13)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경우 기기용량문제, 발생폐기물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통해 발생한 폐기물도 음식물쓰레기이므로 폐기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14)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 현재 1일 처리용량 100kg이상의 대형 감량기는 공업지역, 일반농지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여 실제 의무감량화 적용사업장에서는 감량기사용을 선호하지 않음. 따라서 감량기기 처리용량 규제를 철

폐하여 각자의 규모에 맞는 감량기를 선택하거나, 에너지소모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방법 다양화 검토**

- ▷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서 1차 분쇄 후 탈수한 후 염분을 제거하여 버려지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

### **(16) 재제조 산업 활성화 필요**

- ▷ 재제조 산업 확대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재제조 인증을 확대할 것.

### **(1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갱신제 도입 검토**

-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분진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허용기준을 15배가량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지역 개발로 인가가 인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명령 불이행시 불이익을 강화하거나 갱신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8)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 강화**

- ▷ 전국 215개소에 해당하는 소형소각시설이 영세성,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다이옥신 등의 유해 대기오염 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합동점검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소각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형 소각장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19) 제주 폐기물 광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확충 필요**

- ▷ 제주도 광역소각시설의 설비 노후와 봉개쓰레기 매립시설의 조기포화로 시설확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사실상 제도도입의 효과가 없고, 세금부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21) 지자체별 쓰레기 봉투가격 합리화방안 마련**

- ▷ 지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차이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차이에서 기인하므로 환경부에서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용역 과정을 점검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2) 제과업체의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 ▷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의 과대포장 위반 건수가 570여건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과대포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3) 유기성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사업 평가과정 조사

- ▷ 현대건설이 보고한 유기성 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 사업결과에  
는 에너지효율성기준이 임의로 변경되고 잔재물을 상품화 여부가  
누락되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고, 허위작성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

## 【대기 부문】

### (1) 강화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계획 수립 필요

- ▷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계획’은 선진국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  
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2)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오염물질 실태파악 필요

-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수도권지역은 항공교  
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3) 경유차 조기폐차 전문업체 선정에 재활용시설 비중 강화

- ▷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폐차대수가 재활  
용시설투자보다 평가점수가 크므로, 시설투자현황을 파악하여 재  
활용시설에 비중을 두도록 할 것.

#### (4)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필요

- ▷ 휘발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EU FTA로 배기가스에 관한 기준변경을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5) NO<sub>x</sub> 저감장치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른 사후조치 필요

- ▷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NO<sub>x</sub>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유차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NO<sub>x</sub>저감장치가 에어컨을 틀거나 가속할 때 등 실제주행 조건에서도 작동이 저하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6) 경유택시 도입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

- ▷ 경유택시 도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에 거스르는 정책이고 택시노동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경유택시 도입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

#### (7) 수입차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 ▷ 최근 연평균 20%이상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입차 배출가스 부품품질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

## **(8) 매연저감장치의 필터 청소비용 현실화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 ▷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해 필터 청소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정기적인 관리도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9) 굴뚝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대책방안 필요**

- ▷ 2013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의 굴뚝 수가 많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억제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과 빈번한 초과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율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 **(10)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총체적 개선 필요**

-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환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문자발송 및 미세먼지에 대한 통일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제도를 마련할 것.

## **(11)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관련**

- ▷ 경제상황으로 인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어야 하나, 소수 자동차업계의 의견에 의해 정책이 좌우된 것은 문제임.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대안으로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연평균 4.5%씩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 감축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2009년부터 숙의해서 결정된 제도를 다시 6년간 연기하는 것은 제도시행자체를 어렵게 하며, 시행연기 직후 자동차관련 주식은 하락하여 증권사 관련자들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연기로 인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회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함.
-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3년 7월 1일 시행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해줄 때, 2012년 11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환경부 차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와 합의되었다고 했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도입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
- ▷ 제도시행을 3달 앞두고 타 부처의 반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동시도입을 들어 연기하자는 것은 기존 속기록을 볼 때 논거가 부족함.
- ▷ 따라서 예정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함.
-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연기는 법적 안정성의 붕괴이자 입법권 침해이며,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신뢰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인 바, 합의한 제도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음.

- ▷ 또한 정부에서 관련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연기를 발표한 기재부의 행태에 대하여 환노위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경고할 것.
- ▷ 저탄소차도입을 통해 감축하기로 한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개정 법률안을 전광석화처럼 제출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임. 내년 1월 1일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설득할 것이 아니라, 장관의 자리와 환경부의 존폐를 걸고 정부 내에서 제도시행을 관철할 것.
- ▷ 2012년 11월 정부설계안과 달리 조세연구원안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3개 기관 공동연구이지만 토론회에서 조세연만 발표시간을 30분으로 주는 등 불균형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됨.

## (12)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신속한 설치 필요

- ▷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37기는 너무 부족하며, 올해는 충전방식 표준인증으로 인해 급속충전기 설치가 늦어졌다고 하나 10월말까지 급속충전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집행을 철저히 할 것.

### (13)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운영 개선

- ▷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시장 발전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 실태 파악 및 보급 활성화에 노력할 것.
- ▷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보급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과도하며, 충전소의 고장 발생이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관리자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인 출입제한, 관리직원 퇴근시 전원차단 등으로 충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점,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급속충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보급할 것.
- ▷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중 92.8%는 관리주체가 지자체, 국방부, 민간기업, 개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42대 중 29대가 작동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충전기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용여건을 개선할 것.
- ▷ 전국 148개 급속충전기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14) 탄소배출권 가격 적정수준 유지 필요

- ▷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배출권총량을 늘렸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어 시장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

려되므로, 가격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15) 한반도 온난화 물질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의 온난화 물질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16)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량 측정 정확성 제고 필요

- ▷ 전자업체 및 발전에너지에서는 IPCC 2006 가이드라인 등급 중 Tier2에 따라 불소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는데, Tier2 기준으로는 실제 불소가스 처리효율은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내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것.

### (17)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과정 주체 다변화

- ▷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행·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의 연계 및 지역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
- ▷ 건강분야를 비롯한 분야별·부처별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 【자연 부문】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차단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CITES종의 가정사육에 대한 방송 출연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불법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CITES종에 대해 주요 포털 사이트·동물병원·동물원·보건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의 경우 불법거래 게시글 차단 등의 협조 요청을 할 것.
- ▷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개체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개체에 대한 관리를 이원화하여 수입시 적발되지 않고 불법 밀수된 개체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 (2) 나고야 의정서 비준 준비 관련

- ▷ 나고야 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내법 체계 마련과 관련 DB 구축이 진행되는 대로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나 관련 자료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것.
- ▷ 나고야 의정서 준비와 관련된 범부처 수준의 공식적 협의체가 부재하고, 환경부는 각 부처의 관련 추진과제의 진행상황 파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각 부처 이행사항을 점검할 협의체 구성 필요

- ▷ 각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또는 별도의 공식 창구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계 협의 필요

### (3)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식 개관을 위한 노력 필요

-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시기에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개관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정식개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4) 수렵면허 재발급 기준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 수렵면허증 갱신시 안전교육 및 사격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허증 재발급 기준을 강화할 것.
- ▷ 수렵장 총기오발사고로 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과 부처 간 협업을 할 것.

### (5) 일본 타이치 고래에 대한 수입불허 대책 필요

- ▷ 환경부를 비롯하여 생물자원관과 각 유역환경청은 일본 타이치에서의 고래 수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훼손을 촉진하고 동물학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이치에서의 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고래 수입 허가 기준과 방침을 마련할 것.

## (6) 육·해상 생물의 수입·관리를 위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 필요

- ▷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개체중 78%, 개체수 96.79%가 환경부의 국내유통 및 사육시설 환경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

## (7) 에볼라바이러스 감수성 동물들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필요

- ▷ 현재 에볼라바이러스 감수성 동물들에 대한 수입자제 요청은 에볼라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온적 조치이므로 에볼라바이러스 감수성 동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8) 야생생물 사후관리 발전 방안 마련

-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최근 전면 개정되었으나, 동물복지 관점을 전면 적용시켜 야생생물 사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할 것.

## (9)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 적극 마련

- ▷ 독도 강치의 경우 종의 확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복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바 있음. 해양포유류들이 정치망어업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멸종위기종인 백령도 물범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보호·관리 방안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할 것.
- ▷ 독도의 강치뿐만 아니라 독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다른 멸종위기 종들에 대해서도 보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10) 생물다양성 수준 증진 실천 방안 마련

- ▷ 생물다양성협약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인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았는데, 비준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 공유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할 것.
- ▷ CBD COP12는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주제로 한 역대 최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행사일정이나 주요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아니하였음.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수준을 아이치 목표만큼 증진시키는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11)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

- ▷ 북한의 경우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고, 산림 황폐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남북한 환경협력은 시급한 문제임. 단기간 내에 환경부 차원의 남북 협력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나 민간 차원에서라도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 필요



## (12)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대책마련 필요

- ▷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노선이 없고,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건임이 밝혀졌음. 이미 부결된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두고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원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케이블카(삭도) 지침 및 가이드라인 관련

- ▷ 법률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현재의 삭도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

## (14) 케이블카 설치 관련

- ▷ 케이블카와 국립공원은 양립할 수 없고, 정부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은 말장난에 불과함. 2012년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과정에서 자치구가 제시한 계획을 반려했던 이유와 향후 환경부의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 밝힐 것.
- ▷ 전경련이 「자연공원 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하도록’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조항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입장 밝힐 것.

### (15) 무분별한 ‘숲가꾸기 사업’ 개선 필요

- ▷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강원도에서도 추진되는데 하층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 후 별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편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동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16)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 보전조치 필요

- ▷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 등록과 같은 보전조치 필요

### (17) 추가적인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관광단지 내 실화 추구

- ▷ 2014년 현재 총 36개의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관광단지에 대한 내실화를 추구할 것.

### (18) 보호지역 확대 의무 실행방안 마련

- ▷ ‘아이치 생물다양성 개선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육상지역은 17%, 연안과 해양지역은 10%로 보호지역을 확대해야 하므로 보호지역 확대 의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 (19)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 ▷ 외래 동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 (20) 백암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 ▷ 백암산 화천평하생태특구사업 관련 사업자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합의에 따른 사항노루 보전을 위한 미네랄 블록 등의 보호방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 백암산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할 것.

### (21) 하천도 습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 임진강이나 한강하구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이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야 하므로, 하천도 습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2) 임진강하구하천정비사업 관련

- ▷ 임진강하구하천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을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 임진강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 임진강하구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장단반도 거곡리 하천에 준설토를 성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 (23)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 필요

- ▷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작성자료를 미보관하거나 부실한 측정대행계약 체결로 경고를 받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업체에서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장조치할 것.

### (24)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자 징계 요구 및 대책마련

- ▷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도 습지이고, 람사르협약도 수면으로부터 6m지역까지 습지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지만, 2009년 이전에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습지범위를 축소했으므로 당시 관련된 책임공무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25)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경위 파악

- ▷ 환경영향평가 당시 수질개선예산으로 6.6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로는 3.9조원만 편성됨. 또한 3.9조원 투입 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관리수계를 2m 낮추는 것을 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므로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것.

## (26) 2012년 철회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추진 검토

- ▷ 제2롯데월드 등 대형건축물로 인한 환경피해가 속출하고 주민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2012년 환경부가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철회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환경보호일반 부문】

#### (1) 조달청 녹색인증기술 가점 폐지에 대한 대응 필요

- ▷ 조달청이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을 마련하면서 녹색기술 인증업체가 조달청 입찰물품에 입점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받을 때 주는 가점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환경유해물질 부적합제품 유통관리 필요

- ▷ ‘2013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산업 결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용품 80개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부적합판정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

### **(3)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개선 관련 자가관리계획 정책의 동참 확대 필요**

-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개선을 위해 업체의 자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체의 1%의 업체만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4)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블랙카본에 대한 대책 마련**

- ▷ 블랙카본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써 어린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이므로, 블랙카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5)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영세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무료 중금속 측정사업 실시 후 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어린이(실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 법적용 유예 대상 시설에 대해 직접 개선해주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율이 50% 이하로 나타났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사업의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유도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법 적용대상과 미적용 대상 기관 간에 오염물질 적발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16년 전면실시하기까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노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7)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필요

- ▷ 어린이집은 유해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
- ▷ 영세한 어린이 집의 경우 바로 실내공기질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나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우선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것.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 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통합점검 필요
-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할 것.
- ▷ 지자체로부터 취합하는 각종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측정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8) 카나리아 측정기 보급사업 재검토 필요

- ▷ 카나리아 측정기 보급 사업은 대상 선정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통해 필요 없는 곳은 회수하여 필요한 곳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카나리아 측정기 보급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통과되면 긍정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방법 재검토할 것.

### (9) 빛공해 등의 생활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 ▷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빛공해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유해 가능성 연구

- ▷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의 경우 전자파와 같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바탕으로 예방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11) 아토피성 피부염 사전예방조치 필요

- ▷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로써 ‘출생코호트’ 사업추진을 검토할 것.

### (12) 라돈관리 종합대책 강화 필요

- ▷ 10월말에 발표되는 라돈관리 종합대책에 실내 라돈 배출을 줄이는 저감조치, 라돈위해성 홍보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포함하고, 내년 예산에 라돈 제거를 위한 보조금지원 등을 검토할 것.



### (13) 방사선 노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부의 예방·관리 필요

- ▷ 국회 입법조사처가 ‘환경부가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원전 인근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여야 한다.’는 입법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
- ▷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쳤다면, 구체적인 협의 내역을 제출할 것.
- ▷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보건 예방업무는 법규정상 방사능 영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

### (14) 석포제련소 지역주민에 대해 건강 유해도조사 실시

- ▷ 석포제련소 인근 초등학교에서 토양오염을 측정한 결과 각종 중금속이 기준치를 수배 초과하고 있고, 농작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수치가 심각하므로 주민건강에 대한 유해도 조사를 실시할 것.

### (15) 석면지질도 공개 세부계획 공개

- ▷ 석면지질도 공개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

### (16) 자연발생석면지질도 공개 후 후속조치 관련

-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공개한 후 후속조치 계획 밝히고, 홍성일반산업단지가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이 높은 지질대 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 **(17) 석면 1% 이상 검출된 지역에 대한 토양 정화조치 및 주민 건강조사 실시 필요**

- ▷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작성 1차보고서에 석면 1% 이상 검출된 지역이 있는데, 해당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할 것.

### **(18) 석면관리법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 전국 어린이집의 88%가 430m<sup>2</sup> 미만이어서 석면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관리법의 관리영역을 확대시킬 것.

### **(19)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필요**

- ▷ 기업들의 환경의식 저하와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혜택을 삭제하고, 악성적인 환경오염 유발행위(고발조치 이상)를 저지른 업소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즉각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법규 위반 녹색기업에 대해 지정취소를 한 적이 없으며,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자진반납하여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조치 필요

### **(20) 친환경상품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화재시 사용되는 가스계 소화기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가스

로 대체하고 있는데, 인체 유해성 시험조차 하지 않고 친환경제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친환경제품 인증시 유해성 검사를 하고, 회수 및 인증 취소 등 친환경상품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마련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기간이 10월 10일에 종료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안의 특성상 아직 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으므로 신청기간 연장과 대대적 홍보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지원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고로 환수하기 보다는 2015년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외에 간병비, 보조기,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
- ▷ 피해등급을 7~8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피해구제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2)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수립의무 대상 중 20%, 비의무대상 중 38% 정도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화학사고 대응에 주민 참여방안 마련**

- ▷ 화학사고 매뉴얼은 국가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난안전법 등을 준용하여 주민들의 훈련·참여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2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 부처들의 통보의무 이행 방안 마련**

- ▷ 충남 금산군 램테크놀러지(주)에서 발생한 질산 유출사고 시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고, 사고 후 영향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유관 부처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통보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산 사고처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화학사고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유관 부처 전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 화학물질 사고에 불안해하는 주민과 기업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기업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25) 화학물질 사고 시 출동, 안전장비, 주민 훈련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 ▷ 2014년 1월 화학물질안전원이 개원하였는데, 11건 정도 출동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했고, 램테크놀러지 사고의 경우에는 출동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볼 것.
- ▷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사용유효기간이 평균 약 30% 정도 지났는데, 대응장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 ▷ 화학물질 모의훈련과정에 주민 안전훈련을 마련할 것.
- ▷ 주민까지 참여하는 지역 안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알권리법을 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할 것.

## (26) 해외직구 품목 중 페인트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 페인트는 크로늄 VI 때문에 취급제한물질로 되어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등 해외 직구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양성하고 있으므로, 관세청과의 협조 등 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할 것.

## (27) 미용업소 실내공기질 개선

- ▷ 미용업소 실내공기질 현장조사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는바, 이용 국민이나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8)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안 마련

-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생활화학용품에 납, 카드뮴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졌으므로 유해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안)에 반영할 것.

### (29)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필요

- ▷ 화평법 시행 전까지 개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들이 안전에 대한 기준없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산업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이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30) 사전예방을 위해 고위험우려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 필요

- ▷ 유럽연합에서 사용제한 후보물질로 지정된 고위험우려물질 중 114개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내년에 시행되는 「화평법」에 따른 등록·평가를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1) 유해화학물질지정 확대 필요

- ▷ EU 리치(REACH)에서 제한물질로 지정·관리하는 97개종 물질 중 53종은 현재 미규제 상태이므로, 유해화학물질지정 확대가 필요하며, 「화평법」에 따른 등록심사·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 (1) 반강제적인 본부파견 축소 필요

- ▷ 환경부 산하기관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반강제적으로 환경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환경부직원이 해야 할 일반업무를 파견자가 수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환경부가 필요한 인력은 정식으로 직제에 반영해 근무인력을 보강할 것.

## (2) 대기·수질·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환경관련 관리·단속과 관련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따라 점검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자들의 전문성 향상 필요
- ▷ 지방(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환경감시단의 특정경비 증액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 (3)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한 조치 마련

- ▷ 한국환경공단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확인과 조치를 취할 것.
- ▷ 환경부가 실시한 각 지방환경청의 종합감사결과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의 청에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환경청의 종합감사결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 ▷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1,2급 직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작성·서명한 문제, 네오그린과 체결한 용역을 중단하고 드림파크 문화재단과 계약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환경부 감사관실이 진상조사를 하여 조치할 것.

**(5) 한국환경공단 의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경부 내부감사 필요**

- ▷ 한국환경공단은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계약과 설계방식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각방식의 경우 복합오염이 우려되므로 환경부의 내부감사 필요

**(6)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관련 감사 필요**

- ▷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환경부가 사전예비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

**(7)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도 점검 및 통폐합 필요**

-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다양하여 소비자들의 구분이 쉽지가 않고, 유사한 인증끼리 중복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인증제도에 대한 점검 및 통폐합을 통한 개선 필요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고발자 집단따돌림 조사 필요**

- ▷ 공사 1,2급 간부 전원이 집단서명하여 사내게시판에 “제보자는 조직을 떠나라” 라고 게재하는 등 사내 비리를 제보한 간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직장내 집단따돌림이므로 환경부는 조사하여 보고할 것.



##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 (1) 지자체 공무원의 단속교육 강화를 통한 단속률 제고 필요

- ▷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시 지자체의 적발률이 환경부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단속률을 제고할 것.

### (2) 지방환경청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

- ▷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환경청마다 지급되는 자문료가 다르므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에 따른 지방부담 조정 필요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법인화됨에 따라 향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북 상주시가 과중하게 재원부담을 지지 않도록 환경부의 책임을 촉구함.

### (4) 환경행정의 무분별한 지방 이양 방지

- ▷ 구미불산 사고로 인해 지방으로 이양되려던 유독물질 관리가 중앙부처로 재이관 되었듯이, 환경규제의 무분별한 지방 이양을 논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환경 관리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지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 지방청 공통사항 ◀

### (1) 환경감시관의 처우 개선 필요

- ▶ 지방환경청에서 오염물질을 상시 단속하는 환경감시관의 활동비가 타 부처의 특수사법경찰 활동비보다 낮은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 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 최근 5년 사이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동일 또는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모든 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통 지적사항이 많이 있음.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와 더불어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휴지광산의 광해방지 대책 필요

- ▶ 폐광산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행광산과 휴지광산의 경우에는 광산보안사무소에서 광해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지광산을 관리하기에는 관할 범위 등이 넓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 지역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4) 구제역 가축매몰지 수질조사 철저 필요

- ▶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점검회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축 매몰지의 관리 및 수질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5) 수질오염사고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전국 4대강 수계에서 지난 3년간 평균 60% 수질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책 필요

- ▷ 대구청은 물놀이 수경시설 점검 대상 31곳 중 8곳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적극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전북지역은 36곳 중 33곳이 검사횟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자체에 맡기기보다 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질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것.

#### (7) 산업단지 등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제고 필요

- ▷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실제 폐수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폐수유입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8) 도료함유기준 확대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필요

-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실적이 부진하고 각 지방·유역청은 관련 인프라,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9) 멸종위기종관련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및 전문가 확보방안과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관련업체에 대한 사육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10)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동물카페 및 실내동물원 조사

- ▷ 최근 일부 백화점이나 카페 등이 실내동물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원숭이, 사막여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육환경이 부적합해 보임. 또한, 일부 멸종위기종 수입업자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분양하고 있는 실정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동물카페 및 실내동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육환경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업자의 인계인수과정상에서의 정부공유체계를 수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1)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운영 개선 필요

- ▷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운영관련 규정이 없어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 담보가 어려움으로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자문단 구성에 있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12) 클린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클린주유소 279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7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볼 때, 클린주유소 지정 전 부실한 점검과 지정

이후 운영상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13) 화학물질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수행 대책 필요**

- ▷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지방유역청으로 대거 이관될 예정이지만, 환경청의 현재 조직 및 인원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4대강 유역청 공통사항 ◀**

### **(1)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인프라 개선 필요**

- ▷ 영산강청 관리 지정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균 지도·점검을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다른 청도 점검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현장인력 교육 등 지도·점검인프라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2)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검토 필요**

- ▷ 주민지원사업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11년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변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 법적근거 없이 매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의 정비 필요

- ▷ 포상금 사용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없고 법적근거 마련이 무산됐음에도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포상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4)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필요

- ▷ 여유자금 과다 보유는 기금재원의 과다로 인식되어 상·하류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것.

### (5)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준수 필요

- ▷ 전국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현황을 보면 기준인원의 68.5%이며 특히 강원도는 27%밖에 안 되므로 관련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

### (6) 불법 낚시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유역 불법낚시터 조성에 대한 환경청의 대응이 미흡한데 환경지킴이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7)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견에 KEI의견 반영할 것

- ▷ KEI는 각 유역청에게 의뢰받아 작성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가 조사를 위한 조사, 누락과 미제시가 많다고 하는 등 매우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각 유역청은 KEI의 의견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 작성한 사업자에게 보고서의 부실함을 정확히 지적할 것

### ▶ 한강유역환경청 ◀

#### (1) 노후하수관에 대한 관리 필요

- ▷ 상수도관에 비해 하수관에서 싱크홀 발생건수가 급증하므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 일제 정밀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며, 청에서 전국 지자체 간 하수관거 노후도 평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신청할 것.

#### (2) 한강 유역 폐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 한강수계에 침몰된 폐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선박들에 대한 관련기관 등과 함께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3) 경기도 미선나무 자생지 보호 대책 필요

- ▷ 경기도 여주 골프장건립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

#### (4) 군포 송정지구 멸종위기종 맹꽂이 보호대책 마련

- ▷ 군포 송정지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맹꽂이 서식지 보호대책이 미미하기에 향후 사업진행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5) 팔당호 생태학습선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생태학습선의 선장과 기관사는 환경과학원 소속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질 수 있으며, 재난훈련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관리 강화

- ▷ 최근 2년간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농공시설이 있는데 자가측정과 달리 청에서 지도·점검할 때는 배출허용기준 내로 검출되고 있으므로, 점검일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개별폐수배출시설보다 처벌조항이 약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총체적으로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 ▷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해물질을 함유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단속·점검이 소홀한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3) 낙동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갈등 해소 필요

- ▷ 낙동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과 관련한 지자체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4) 뉴트리아 퇴치 예산 필요

- ▷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 운영 등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할 것.

## (5) 통영골프장 토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통영골프장 건설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검토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바다자원 훼손우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

## (6) 미륵도 골프장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준수

- ▷ 통영 미륵도 골프장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여 지난 여름 폭우시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근 바다가 흙탕물로 변하는 등 주민 피해가 있었는 바, 토사유출관련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

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규정, 절차를 위반한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7)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수질 악화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응집제 투여량이 과다하여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돗물 수질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8)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방치된 폐준설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9)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소음진동 및 유해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 필요**

-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2007년 한 차례 특별점검한 이후 지난 5년간 특별단속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금강유역환경청 ◀

### (1) 금산군 램테크놀러지 불산유출사고 관련

- ▶ 램테크놀러지 불산유출사고시 주민을 대피시키지도 않고 오염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대처가 미흡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 금강의 최상류인 조정천 발원지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인 램테크놀러지에서 최근 1년 사이에 화학사고만 3차례나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임. 사고의 반복 및 은폐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해당 지자체에서 청정지역에 인허가를 해준 경위 및 화학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반영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

### (2) 홍성일반산업단지 건설지역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필요

- ▶ 홍성일반산업단지 건설지역은 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한 석면지질도에 따르면 자연 석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는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발생석면 실태와 건설 현장 작업자나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3)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동북호 주변 지자체간 갈등해소방안 마련 필요

- ▷ 동북호의 경우 댐 설치지역과 물이용자 간 시도경계가 달라 오염원 관리책임에 대한 지역갈등이 있으므로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 합동방재센터 파견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 ▷ 합동방재센터 파견 직원은 화학재난업무 경험자의 비율이나 자격증 소지 비율이 낮고, 교육 이수율도 저조하므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자를 선발할 것.

### (3) 제주시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필요

- ▷ 제주시는 광역소각시설의 설비 노후 등으로 매립 비율이 증가하고 재활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원주지방환경청 ◀

### (1) 포스코 폐놀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 강릉시 옥계 포스코 제련공장의 폐놀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정화공사 진행 등 사후 수습과 주민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할 것.

### (2) 환경감시단 신설 필요

- ▷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에서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이 하고 있으므로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원주청 소속으로 환경감시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 (3) 제천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에어돔 붕괴사고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원주청이 철저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4) SNS 홍보단 운영 활성화 대책 필요

- ▷ SNS 홍보단 활동 운영성과가 거의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5) 친환경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노력 제고**

-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당초 목표대로 탄소배출량 50% 감축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6) 가리왕산 훼손에 대한 대책 필요**

- ▶ 가리왕산의 환경 훼손에 따른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반암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므로 실질적인 복원 대책을 강구할 것.

## **▶ 대구지방환경청 ◀**

### **(1) 낙동강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낙동강 2권역은 4대강 공사전보다 2배 이상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칠곡보 하류 강춘치 폐사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낙동강수계 수질악화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

### **(2)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오염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영풍석포제련소 굴뚝 반경 지역에 나무가 계속적으로 괴사되고 있으며, 제련소 주변토양과 농작물을 채취하여 분석하면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나 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더

불어 주민 및 토양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등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3) 효율적인 가시박 제거방안 마련 필요

- ▷ 낙동강 상·하류 및 주요지천에 대한 일체제거 등 효율적인 가시박 제거 대책을 마련할 것.

### (4)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방치된 폐준설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5) 4대강 사업이후의 생태계 보전대책 필요

- ▷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전역에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과 같은 법정보호종이 무려 24종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바, 재자연화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할 것.

## ▶ 새만금지방환경청 ◀

### (1) 분뇨처리비용지원 축소 필요

-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계획과 달리 분뇨처리비용지원 때문에 가축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분뇨처리비용지원규모를 축소해야 하며, 한센인 2세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한센인이 아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한센인으로 부정등록하여 분뇨처리비용을 추가 지원받는 농가를 조사할 것.

## ▶ 수도권대기환경청 ◀

### (1) 합리적인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필요

- ▷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지침에는 시료채취구의 높이가 1.5~10m 범위로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원칙보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만든 지침이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저공해자동차 구입 목표달성 대책 마련 필요

- ▷ 2005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이후 2013년까지 저공해자동차 목표를 달성한 것은 2012년 한 번에 불과하고 의무구입가능한 차종도 2014년 10월 현재 46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저공해자동차 구매목표 달성이 어려워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를 앞장서야 할 필요

-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무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지난 6년간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잔여배출량이 7.7%, 하루 평균거래가 0.2건 정도로 거래량이 저조하며, 거래금액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환경분쟁조정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 환경분쟁관련 통계에서 신청인, 피신청인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1인당 배상금, 처리기간, 참여인원 등등 환경관련통계연보 등에서 환경분쟁 통계자료의 분석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 소음진동에 대한 분쟁도 공사장소음, 층간소음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므로 세분화된 통계작성 필요

#### (2) 환경피해 배상금 현실화 필요

- ▷ 1인당 평균배상금이 79,223원으로 분쟁조정위의 조정효과가 미흡하므로 배상기준의 현실화 필요

#### (3) 원인재정 도입 필요

- ▷ 환경분쟁조정 제도에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재정 도입 필요

#### (4) 원인자부담 조사 또는 직권조사 후 구상 제도 필요

- ▷ 특정사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 등 전문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직권 조사 후 구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5) 재정위원 구성시 전문성을 고려한 선임 필요

- ▷ 재정결정 불복 비율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재정위원 구성시 환경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할 것.

#### (6) 분쟁기간 중 담당 공무원 강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 ▷ 분쟁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피신청인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7)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 층간소음에 관하여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부처 간의 협의 필요

#### (8) 높은 공공기관 불복률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공공기관 불복률이 전체 불복률의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분쟁제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9)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분쟁기간 장기화 대책마련 필요**

- ▷ 분쟁조정 중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사건은 45.6%에 달해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분쟁위의 행정적인 문제로 조정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10) 밀양 송전탑 재정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필요**

- ▷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의 재정신청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분쟁위의 현장조사는 단 하루에 그쳤다는 것은 문제이며, 재정신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분쟁위의 권한과 책임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환경과학원 ◀**

### **(1) 사전예방적 연구 강화 필요**

- ▷ 환경현안 해결형 연구에 치중하기보다는 미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

### **(2) 가축분뇨 점오염원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

### (3) 여수 GS칼텍스 원유 유출사고 대응 미흡

- ▷ 여수 GS칼텍스 원유 유출사고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발생 8일 후에 도착했고, 검출기 위치도 사람 눈높이가 아니라 과학원 버스 위에 스탠드형으로 배치하는 등 사고대응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원은 분석 등을 통해 주민 대피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강화 필요

-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 홍보 방안이 필요하며, 안심지하수 등 조사는 많이 하고 있으나 문제 발견시 조치 방법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지하수 중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의 기준 설정 및 연구와 더불어 대체상수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5) 습지관리 체계의 인원·예산·권한 강화 등의 방안 검토

- ▷ 국립습지센터 등 습지관리체계의 인원·예산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독자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6) 미세먼지 예보 등 관리강화 필요

- ▷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수도권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가장 부정확하므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7) 전자파 관련 조사 및 연구 필요**

- ▶ 지중화 송전 선로에 대해서 전자파 측정이 필요하고, 영유아 보육 시설과 어린이집, 주거단지 등 민감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감지역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 등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 **(8) 블랙카본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교실에서까지도 높은 농도 수준으로 블랙 카본이 측정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원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9) 화학사고 관련 지휘체계 단일화 및 신속한 사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과학원 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대피 및 사고대응 조치 등은 안전원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지자체 요청시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영향 조사는 여전히 과학원의 업무이므로 화학사고와 관련한 지휘 체계 단일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방법 마련 필요

## **(10) 하자 있는 특수화학분석차량 구매 문제**

- ▶ 특수화학분석차량을 105만불에 구매하였는데 대기 중의 독성물질 탐지기능이 없는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검수하였고, 2011년 6월

에 하자 있음을 알았음에도 허위보고한 담당 직원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도 감사원 감사 후 이루어졌으며, 허위보고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였고, 그 당시에는 징계시효도 남았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고,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은 문제임.

#### **(11) AI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 필요**

- ▷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AI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과학원은 현재 까지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AI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12) CMIT/MIT 물질에 대한 연구 필요**

- ▷ 과학원에서 CMIT/MIT 물질에 대한 연구 필요

#### **(13) 만성흡입독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조 필요**

-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원에서는 만성흡입독성 시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취급되는 분야는 달라도 물질은 동일할 것이므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것.

#### **(14)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필요**

- ▷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원이 물환경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낙동강 보구간 수생태계 변화실태)는 4대강 사업을 정확히 반영한 자

료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4대 강 사업 당초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에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과학원 자료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15) 타이어 화재로 인한 폐수유입 연구 필요

- ▷ ‘2012년 금강·낙동강 어류 폐사 떼죽음’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 4월 아모레퍼시픽 화재사건, 9월 한국타이어 화재사건으로 인해 금강에 폐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원은 지속적인 수질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확대에 대한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16) 홍성일반산업단지 자연발생석면 대책 마련 필요

- ▷ 홍성일반산업단지가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추가 광물조사, 추가 지질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 국립생물자원관 ◀

#### (1)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 ▷ 2010년부터 나고야 의정서 발효(2014.10월)가 예정되었는데 바이오관련 기업의 인지도 조사 및 대응 관련 정부 공식자료가 없는 등 준비가 미흡하므로 홍보 등 대책마련 필요

- ▷ 2011년부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홍보, 기업 대응책 마련,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

## (2) 멸종위기종 수입에 대한 자원관 역할 철저

- ▷ 지방유역청에 멸종위기종 동물 수입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이 생물자원관의 역할인데, 자원관의 입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3) 멸종위기종 수입에 대한 자원관 입장 변화 문제

- ▷ 2013년 1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 수입허가 신청 시 고래학살지이며 종 보전을 위협한다고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일본의 타이지에서 포획하였다는 사유로 불허하였으나, 2014년 거제시월드 큰돌고래 수입허가 신청 시 이를 허용하였으므로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 필요

## (4) 비효율적 연구용역 감소 필요

- ▷ 최근 3년간 전체 연구 수 대비 연구용역 수는 50%이상이며, 직접과제가 예산은 43건에 37억원, 외부용역과제는 63건에 139억 원으로 외부용역과제가 4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외부연구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내부연구자 사기진작을 통해 자체연구 비율을 높이고 외부용역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5) 기관장 수시교체 문제 개선 필요

- ▷ 기관장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직원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기관장의 요구기준을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임기까지 중도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6) 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필요

- ▷ 홈페이지에 주요 연구사업 및 업무계획이 2014년에는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 (7)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존 및 노력 필요

- ▷ 현재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 및 지속적 관심 등 노력 필요

#### (8) 스마트폰 앱 활용도 저조

- ▷ 5개의 대국민 앱을 개발하였으나 전체 다운로드 수는 11,167회에 불과하므로 무분별한 앱 개발은 지양하고 유용한 앱은 잘 관리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 (9) 유전자원 무상분양 시스템 개선 필요

- ▷ 유전자원 무상분양 서비스의 경우 심사기준이 간단하고 형식적이므로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유전자원이 공공기관에 의해 불법 유통되어도 알 길이 없는 시스템의 개선 필요

## (10) 해외반출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한반도 생물표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기관과 상호공동연구 활성화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반출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주권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1) 환경교육을 환경인력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개편 필요

- ▷ 국립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인력개발원의 설치 목적에 맞게 환경교육 관련 사업들을 일원화하여 환경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 전임강사 확보 필요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전임강사가 한명도 없어 환경전문인력 양성이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임강사 확보가 시급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3) 실험기자재 관리 및 교육계획 개선 대책마련 필요

- ▷ ‘측정과정’ 교육의 실험기자재 중 내구연한이 초과한 기자재는 정도관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2012~2013년 교육 계획인원 대비 교육실적을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미달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4) 석면감리원 선발기준 및 교육제도 개선 필요

- ▷ 석면감리원이 되려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석면감리원의 경우 경력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선발기준과 교육제도 개선 필요

#### (5) 환경기술인에 대한 사이버교육 점검 필요

- ▷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사이버강좌 교육생 수료율이 저조해지는 등 교육의 형식화가 우려되므로 점검필요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 배출전망치(BAU)를 높이는 것은 전체 배출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업계의 요구에 의해 완화하는 경우 차기 정부의 부담이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 비정규직 비율 축소 필요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고용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55%로 과다하며, 연구원들의 퇴직 현황을 보면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화학물질안전원 ◀

### (1) 화학사고 대응 관련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주민과 노동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문제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공유하는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며, OECD 화학사고 예방지침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안전원 개원 후, 현장출동 11건 중 5건은 1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화학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1시간만 체류하는 것은 너무 짧으며 현장대응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컨드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할 안전원에서 화학물질 관련 피해상황 및 사후조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며, 최근 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외진 곳의 사고가 50%에 육박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감시를 피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화학물질 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안전원이므로,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11건의 현장출동 중 3건의 사고는 사건 접수로부터 현장도착까지 화학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인 4시간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학사고의 초동조치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사고 대응교육’의 빈도를 높일 필요
- ▷ 방재업무에 있어 현장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고, 전문성 있는 방재작업 지원 측면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2) 산단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마련

- ▷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므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3) 화학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 화학물질안전원과 합동방재센터의 인력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

## (4) 스마트폰 앱 활용도 저조

- ▷ 7,500만원을 들여 화학물질 응급대응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였고, 유지비용이 연간 1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전체 다운로드 수는 3,300회에 불과하므로 무분별한 앱 개발은 지양하고 유용한 앱은 잘 관리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 (5)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지침 마련시 법령준수 필요

- ▷ 사고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었는데 바뀐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은 안전원의 기능이 논의 시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의 시스템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보이며, 화학사고조사단을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찾고,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법령의 위임범위에 한정할 것.

## ▶ 한국환경공단 ◀

### (1) 발주사업 계획준비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 ▷ 최근 5년간 공사 도중 증액된 공사비가 1,407억원에 이르고 있음. 물가변동, 현장여건변동 등의 요인도 있지만, 사업 계획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사업점검이 부족한 부분도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최근 공단이 설치한 포항시와 김해 한림 음폐수 시설과 관련해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2) 턴키방식의 발주 저감 필요

- ▷ 턴키방식 발주를 많이 하는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니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할 것.

### (3) 입찰담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환경공단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하고, 턴키방식은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입찰방식이므로 계약이나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 영농폐기물수거사업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 현재 민간수거위탁자 전원이 공단 출신으로 공단 퇴직자에게 독점 계약은 특혜이며, 이물질 과다, 이중 수거운반비 지급, 폐비닐 수거 등급제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5) 농촌폐비닐 수거율 제고 및 장비개선 필요

- ▶ 농촌폐비닐은 매년 8만톤 가량이 불법 매립·소각·미수거 되고 있으므로 수거율 제고가 필요하고, 폐비닐 처리시설이 노후되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 일부 지역 상수도위탁사업 갈등 해소

- ▶ 고성군, 태백시와 같은 군소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크게 낙후하여 누수율이 높고, 생산원가가 높아지므로 국비지원을 통해 시설보수 계획을 검토할 것.
- ▶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인건비 과다산정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고성군과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

- ▷ 고성군과 태백시 일부 주민들은 위탁비용 대비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인프라 개선 등의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7) 노후상수관 재질 개선 필요**

- ▷ 노후 상수관 부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주철과 플라스틱관중 압력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플라스틱관의 강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므로 되도록 PE관으로 개선가능한 부분은 개선할 것.

### **(8) 실내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효율성 향상 필요**

- ▷ 실내공기질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9년 동안 약 1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성 강화에 대한 노력 필요

### **(9) 전기차 충전기 및 관리 인력 확충 등 개선 필요**

- ▷ 전기차 충전기 전문 인력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고장이 33회 발생했고,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기기파손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및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10) 퇴직 앞둔 임원에 대한 최고위과정 지원 개선 필요**

- ▷ 퇴직을 앞둔 임원들에게 고가의 최고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 (11) 골뚝 TMS 국산화율 제고 필요

- ▷ 국산 측정기기의 점유율은 11.1% 수준인데,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국산화율을 높여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2) 완구류 과대포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 국립공원관리공단 ◀

### (1)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준비에 필요업무 보충 필요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법 분리·제정과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업무가 국립공원공단법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 (2) 국립공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 ▷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방문자는 2배 증가했지만, 주차대수는 12.37% 증가에 그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도록 노력할 것.

### (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관련 대책 마련 필요

- ▷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특정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4)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내실화 필요

- ▷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 및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탐방객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5) 대피소 낙뢰사고 대비 필요

- ▷ 대피소 낙뢰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6) 대피소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 설악산과 지리산 등은 비박이 허용되지 않아 대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특정 산악회가 자동예약프로그램을 사용해 대피소를 예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7)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문인력·장비 확충 필요

- ▷ 국립공원 안전관리 담당자의 90%가 비정규직이고, 업무의 중대성과 노고에 비해 연봉도 낮아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특히 재난구

조대는 근속기간이 짧고 전문자격보유율이 낮으며 1년 단위 고용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 2014년 9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팀별 최소인원 6명을 맞추도록 했으나, 안전관리팀 303명 중 150명이 비전문구조인력이어서 가장 취득이 용이한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구조팀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
- ▷ 암벽등반 관련한 구조장비 보유현황이 매우 열악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정비가 미흡한 상태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 주요구조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부족하므로 인력, 처우,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상 단기적으로는 구조장비를 전수조사한 후 공원 사무소별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 산불감시카메라가 전 공원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 대책 필요**

- ▷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지만 공단이 보유한 95개 기상관측기기 중 86개는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기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사진전 입상을 위한 자연훼손 대책 마련 필요

- ▷ 국립공원 사진전에 입상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 출입, 동식물에 인위적인 피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를 충원하여 훼손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1)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역 확대 필요

- ▷ 국립공원 면적은 전국토의 3.9%, 자연보전지역 면적은 1.5%에 불과하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2) 지리산 국립공원 관련

- ▷ 지리산 성삼재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성삼재 주차장은 하부에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지리산 생태계는 하나인데 지리산 국립공원은 사무소는 3개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정책 신중한 검토 필요

- ▷ 설악산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훼손이 심각하며, 핵심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14) 각 사무소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마련 필요

- ▷ 매년 실시되는 자체 종합감사에 따르면 ‘위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 소홀’ 등이 여러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일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1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확충 방안 마련

- ▷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는 11개로 국립공원 한 곳당 1~2개 수준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나, 무등산에 서식하는 담비의 경우 활동반경이 넓어 로드킬 우려가 높으므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관련

- ▷ 제3매립장 연장과 관련하여 3개 시도간 협의가 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 제3매립지 구성에 57개월의 공기가 소요되고, 시공사는 3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 우려되므로 경기도에 대체 매립지 구성을 검토하거나 매립면허 관청을 국가로 이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매립지 테마파크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 수도권 매립지 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올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의 계획도 필요함.

## (2) 드림파크문화재단 전문위원 채용 관련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형사출신을 드림파크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3) 내부고발자 징계 관련

- ▷ 개인업무추진비 유용사례를 내부고발한 자를 해고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가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사장이 품위유지를 위반했고, 인사권 남용 및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은 경고에 그쳤으나 그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해임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이므로 복직시켜야 할 것.
- ▷ 불법해고된 제보자가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할 이행강제금, 소송비용등에 공사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
- ▷ 제보자가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내용을 공사로 역제공받은 경위가 불투명하므로 매립지공사는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
- ▷ 거액을 들여 이메일 해킹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 (4) 음식물탈리액 매립지공사가 직접 관리 필요

- ▷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탈리액은 협약을 통해 위탁반입하는데, 서울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음식물탈리액은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에서 관리하여 2013년 국정감사, 2014년 환경부 특별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매립지공사가 수집·운반업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할 것.

#### (5) 안암도 우수지 수질악화 대비책 마련 필요

- ▷ 공사 내에 있는 안암도 우수지의 수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용존산소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사가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우수지 오염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우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것

#### (6)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대책 마련 필요

-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의 가동률은 42%에 불과하며, 가동 중단 사유는 혼합설비불량 등 기계적 결함이 대부분이나 시공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부도를 내서 하자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 하수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은 에너지 효율이 82%에 불과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으므로 에너지 회수 효율을 개선하고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7) 일반하역장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대책마련 필요**

- ▷ 하역장의 기록관리는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반하역장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 필요

## **(8)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활용방안 마련**

- ▷ 매립지공사에서 건립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 드림파크 골프장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 골프장 예약 당첨률이 낮고 단체팀의 선정기준을 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그린워싱 관련**

- ▷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기업경영 효과성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 그린워싱 관련 홍보, 광고 등의 성과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 친환경위장제품 만연으로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고,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장모니터링·검증을 제대로 관리하고, 환경성 주장 검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필요

- ▷ 그린워싱은 국가공인인증마크나 민간인증마크 모두 관리대상이나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필요

## (2) R&D 성과 관련

- ▷ R&D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정성지표로서 제품화, 지적재산권 취득실적, 학술지 게재와 같은 정량적 실적이 없는 과제도 “성공” 과제라고 평가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효율적인 성과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R&D 과제 평가 관련하여 최종과제를 평가할 때, ‘성과활용 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10점으로 상당히 낮으므로 상향조정할 것.

## (3) 환경인증마크 제도 개선 필요

- ▷ 대부분의 프린트 제조 대기업들이 자사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레버칩을 삽입해 넣고 있어 재활용시 제품의 파손율이 높아 손실이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마크 인증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클레버칩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인증마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

#### (4) HCFC-123 사용 소화기의 친환경제품 인증 개선 필요

- ▷ 오존 파괴물질인 할론계를 대신해서 HCFC-123을 사용한 소화기는 HCFC-123이 화재 진압 시 맹독성인 불화수소(HF)가 발생 시킴에도 친환경제품 인증을 부여받은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기간연장 및 홍보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전체예산 110억원 중 77억원이 불용처리 될 상황이며, 이는 홍보부족과 짧은 신청기간 때문이므로 피해자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연장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

#### (6) 신기술 평가제도 활용실적 제고 마련 필요

- ▷ 신기술 평가제도는 현장적용률이 낮고, 적용건수와 공사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의 전환, 해외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7) 녹색매장 지정제도 확대 필요

- ▷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임의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의지가 있는 기업만 참여하고 있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하므로 대형 유통매장 대상으로 녹색매장 지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8)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용자사업 개선 필요

- ▷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3대 용자사업 관련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담보 부족 등의 문제로 용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자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9) 이차보전 사업의 재정용자 방식 전환 필요

- ▷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일방적인 지출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

#### (10)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사업에 대기업 비중 과다

- ▷ 사업의 취지와 달리 ‘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비중이 높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11) 유기성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 개발사업 관련

- ▷ 현대건설이 2010년부터 4년간 진행한 ‘유기성 슬러지 열가수분해 실증화 개발’ 사업은 성공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운영이라는 당초 목표에 어긋나고, 에너지 소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잔재물을 복토제 또는 시멘트보조연료제 등으로 제품화하지 못하였으나 경제성 평가 항목에서 누락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 국립생태원 ◀

### (1)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상생 발전방안 강구 필요

- ▷ 서천군내에서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0% 이하이고, 임직원 정주 비율이 낮으며, 주말 관람객 폭증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 국립생태원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생태원 조직 및 인사 등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직제개정 추진 등을 검토할 것.

### (3) 기초생태조사 확대 필요

- ▷ 제4차 전국 자연환경조사가 2014년부터 시작하는데 제3차 자연환경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종다양성조사, 환경지표종 조사를 포함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할 것.

### (4) 생태원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필요

- ▷ 국립생태원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등 마케팅 전략이 미비해 보이므로 야간개장, 이동수단,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마련하도록 할 것.

#### (5) 생태원 전시동물의 편중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생태원 전시동물의 구성이 종별로는 어류가 66.9%, 개체수로는 87.8%나 차지하고 있고, 어류의 대부분이 생존율이 낮은 소모성 어류임에 따라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전시동물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 현실적인 뉴트리아 퇴치방안 연구 필요

- ▷ 생태원에서는 생태계교란종인 뉴트리아의 퇴치방안으로 천적인 삶, 너구리, 수달을 이용한 자연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복원이 필요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퇴치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므로 재검토할 것.

## 2) 고용노동부 소관

### ▶ 고용노동부 본부 ◀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부문】

##### (1)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

- ▷ 근로감독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윤리에 어긋난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것.

##### (2) 여성의 고위직 진출 노력

- ▷ 성실하고 역량을 갖춘 여성 공무원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제고

- ▷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중이 저조하므로, 우수한 여성 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 제도 취지에 맞는 개방형직위제 운영

- ▷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개방형직위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조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개방형직위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개방형직위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 퇴직 후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 마련

- ▷ 고용노동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소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관의 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 공정한 인사관리

- ▷ 직렬에 따라 승진소요기간에 2배 가량 차이가 있고, 장기간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할 것.

## (7)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상담원 처우 개선

- ▷ 고용노동부 소속 210명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
- ▷ 직업상담직 직원은 2007년 이후 결원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

## (8)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 관리 강화

- ▷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들이 구축·운영 중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와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음. 성과가 미흡한 홈페이지 등은 없애는 등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자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전략을 수립할 것.

### **(9)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확대**

- ▷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핵심협약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비준실적이 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여 저조함. 추가 협약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0) 행사 관련 예산 절감**

- ▷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준을 마련할 것.

### **(11) 제주고용센터 청사확보 지원 필요**

- ▷ 제주고용센터는 자체 청사가 없으므로 제주고용센터 자체건물 확보를 지원할 것.

### **(12) 전산조회시스템 개선**

- ▷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할인현황 등을 전산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고용 부문】**

### **(1)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관리 강화 필요**

- ▷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이 2012년 5억 8,000만원, 2013년 8억원, 2014년 상반기 6억원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 보수를 적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많이 받도록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징수된 보험료가 2013년 9,744억원이며, 미환급금은 135억 5,800만원에 이르므로, 환급처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리 강화**

- ▷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이 연간 1조 7,000억원에 이르나, 매년 부정수급액은 증가하고 있는 등 질관리가 미흡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 확대를 할 것.
- ▷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취업자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들이 있으므로, 훈련기관 1차 평가 시 취업률과 수료율을 반영할 것.

- ▷ 원격훈련에서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 ▷ 고용센터 인력부족으로 원격훈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 관리방안 개선 등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중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수 있으므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기준 중 노동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
-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볼 때, 참여기업들이 지원받은 후 인력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국고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 내일배움카드제의 수수료율이 1.4%로 은행에 수수료로 최근 5년간 144억 4,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수수료 면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과정의 전담자가 계약직으로 되어 고용불안 등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동사업 수행주체의 인적구조를 안정화하도록 할 것.
- ▷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산업인력공단 및 검정원의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사·중복되는 업무나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

- ▷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일부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에 의거하여 인력공단이 자격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원상회복 할 것. 다만, 그 소요기간동안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것.
- ▷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공정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청문위원이 위촉되고 있는 바, 청문인력풀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

### (3)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 대학생은 12학점 초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학생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것.
- ▷ 계속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사용자 변경 당시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것.

### (4)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강구

- ▷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양적 확대에 매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서울, 수도권에 비하여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등의 지역은 직접고용의 비율이 낮고 청년실업률이 높으며, 정리해고를 겪고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 기업과 함께 이를 개선할 것.

- ▷ 구인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구인업체 관리 인력을 확충할 것.

### (5) 희망리본사업 지속 필요

- ▷ 희망리본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희망리본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보다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므로, 희망리본사업 이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것.

### (6) 기술자격체계 개선

- ▷ 국가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공공성을 훼손하였는 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 한국폴리텍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부패지수만 높아지는 등 구조적으로 부정행위에 취약하므로 근본적인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것.
- ▷ 민간자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자격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국민들이 많으므로, 중국 노동사회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검정을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 두루누리사업 방향 재설정**

- ▷ 두루누리사업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중 기존 가입자의 비율이 88.2%에 이르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가입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8)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부정행위 엄중 처벌**

-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9) 세월호 관련 실업자 대책 마련**

- ▷ 세월호와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동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

### **(10)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에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수행(학생 설문조사, 예산수반 조사, 기타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검토할 것.

## **【노동 부문】**

### **(1) 화물운송근로자의 불공정 계약 시정**

- ▷ 화물운송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상당히 불공정하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할 것.

### **(2) 백화점, 마트 직원 인권침해 취업규칙 개선**

- ▷ 백화점, 마트 등에서 근로하는 사원에게 인권침해적인 취업규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고 개선할 것.

### **(3) 사업장 근로관계법령 위반 시정 및 해소**

-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난해 업무과다로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법령위반사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개선할 것.
- ▷ 정선 소재 (합)보성택시에서 여러 법령위반 사례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할 것.
-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협력사협의회, 세방산업, 대양ENG, 용성기업, 에프이이노베이터, 해인오션, 디에스마린 등의 업체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동의서를 징구하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

-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설치기사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 중부지방노동청 등 관할 노동청)가 광역회의를 통해 대외 비문건을 만들어 감독을 완화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히 조치할 것.
- ▷ 인천일보에 대하여 제기된 다수의 권리구제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지도할 것.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은 계약서도 없이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개선계획을 보고할 것.
- ▷ KT가 대량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거부를 한 사람들에게 CFT조직(현대판 블랙리스트)을 만드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 대신증권이 종래 퇴출프로그램(ODS발령)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사례는 부당노동행위업체 창조컨설팅과도 관련 있으므로, 대신증권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 HMC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희망퇴직)과 관련한 노사문제,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부의 사건처리 진행경과를 보고할 것(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정리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인 희망퇴직·명예퇴직·권고사직 등에 관해 노동관계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 삼성SDI가 대량고용변동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 일부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과업내용서를 보면 부당하거나 불법인 내용을 강요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음.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 고용노동부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력통제, 교육실시 등 위장도급의 의혹이 여전하므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한 끝에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다른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엄중하게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4) 경비근로자 부당계약 문제 해결

- ▷ 최근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분신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비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그 배경에는 부당계약서를 강요하는 부분도 깔려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법령위반 사례가 없는지 검토할 것.



## (5)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외국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 청소년이 다수 근로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적절한 근로조건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거나 기숙사비용 부담 등 사업주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고용센터를 통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할 것.
-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약정했던 임금과 다르거나 노인장기요양료를 공제하거나 유급휴가를 뺐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할 것.
- ▷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특히 열악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6) 체당금 관리감독 강화

- ▷ 체당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수급 반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당금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7) 사업장 전자노동감시 문제 해결촉구

- ▷ 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불법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실

시간으로 감시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업장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 관련 훈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8) 임금체불 문제 해소 방안 모색

- ▷ 앞으로 임금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 상당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실시되는데 아직 생계안정 지원에는 소액으로 보이므로 1,000만원까지 점차 확대할 것.
- ▷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을 부과하여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 지방고용노동청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이 많으므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

#### (9) 근로감독 및 처벌에 관한 절차 개선

-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례는 근로감독 시에 매년 대다수 90% 이상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으나, 사후조치 중 99.5%를 시정조치로 일관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정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처벌규정 개정소요도 검토할 것.
- ▷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적발하여도 시정명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 준수의 강제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절한 형사처벌도 내리도록 할 것.

## (10) 실험실 근무 연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 실험실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강화 및 통근재해 보호 확대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교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통근재해의 경우 지나치게 보호범위가 좁아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할 것.

## (12) 부당해고 사업장 근로감독 필요

- ▷ 상시적으로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13) 노동부를 사칭한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치

- ▷ 외환은행 사측이 노동조합의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범죄행위로 보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 (14) 희망퇴직, 명예퇴직 관련 제도개선

- ▷ 사업장에서 정신적 압박에 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문제가 있으므로, 독일, 일본, 영국 외에 스

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고 법 제화하는지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할 것.

### (15)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 ▷ 울산과학대 청소근로자 파업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노동부가 국공립대, 사립대에서 근로하는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장실습생 보호 필요

- ▷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아모제 푸드)에서 근로한 대학생 산학협력단, 중부대학 호텔조리학과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시정하고 앞으로 산학협력단(현장실습생)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 ▷ 산업체 현장실습생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불쾌한 신체접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함과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17) 노동관계법 준수

- ▷ 중간착취금지, 동일가치근로동일임금 등의 노동관련 법조항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법 존재의 의미가 없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1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절

- ▶ 올해 취업규칙이 변경신고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불이익한 변경이었는데 근로자서명없이 ‘의견없음’으로 인쇄해서 돌린 사례, 근로자대표와 합의만 거친 사례,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사례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을 조사하여 법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할 것.

## (19) 직업훈련교사의 처우 개선

- ▶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등 처우가 나쁜 편인데, 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0)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준수

- ▶ 최저임금제도가 최저한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임금의 기준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할 것.
- ▶ 정부가 소득주도경제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시중노동임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내놓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하도록 개선할 것.
-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수습’에 있어 임금감액을 할 수 없음에도, 사업주들이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근절하도록 할 것.

- ▷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제재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과태료가 주된 수단이고 다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제재수단(벌칙)을 마련하도록 할 것.
- ▷ 최저임금 위반의 신고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업체수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 (21)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부가세감면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할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할 것.

### (22)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존치

- ▷ 법체계상으로는 실무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200% 또는 250%까지 가산),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을 제한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급여감소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

### (23) 비위 연루 노무사 등 근절대책 마련

- ▷ 불법과 비위를 저지른 창조컨설팅(심종두 노무사)은 노무사자격이 취소되었지만, 경영지도사 등으로 아직 노동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철저히 조치할 것.

## (24) 사내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 ▷ 유럽각국은 사내괴롭힘을 방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무형의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5) 직무성과급 제도 도입

- ▷ 같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중 직무성과급제도가 필요하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26) 공공부문 임금구조 개편

-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내려졌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공공부문의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임금구조 단순화를 위한 모범케이스를 만들 것.

## (27) 퇴직연금 제도개선

- ▷ 현재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적 연금구조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게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것.

## (28) 법규위반 제재원칙 및 자료 DB구축

- ▷ 법규위반사례가 같은 사업체에서 반복되거나 동일 사항이 반복적

으로 위반되는데도 시정조치만 이루어지거나 같은 사항에 대해 시정·형사처벌로 불평등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것.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사항 자료를 보면 각종자료가 대상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의 DB화를 할 것.

### **(29) 포괄임금제도 개선**

-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음. 이를 개선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 **(30) 초단시간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 ▷ 초단시간근로자들은 근로자임에도 쪼개기계약으로 장기근속도 못하고 4대보험의 적용을 못 받으며 퇴직금도 못 받는 실정임. 초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31)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을 마련할 것.



### (32) 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금 지출관리 필요

-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매년 확대추세에 있고 100%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출연금을 독립하여 구분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가 출연금의 지출 감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비용회수금을 절반(1/2)이나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조사하여 사업적정비용을 산출하거나 지출내역을 정확히 정산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할 것.

### (33) 근로자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

- ▷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에서 활용하는 사내하도급이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가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34)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 차별 해소

- ▷ 비정규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이는 현행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여금 수령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할 것.

### (35)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 ▷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실태조사가 미흡한 경우도 다수 있었음.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의 근로조건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

### **(36) 기간제근로자 제도 개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초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이른 바 쪼개기계약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

### **(37) 노동교육 활성화**

- ▷ 근로자,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은 중요하며, 정규 교과과정에 내실 있게 반영해야 함.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올바른 노동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8) 원자력발전 분야 간접고용 실태 조사**

- ▷ 원전분야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인원, 근로조건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원전분야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39) 학교 당직기사 근로조건 향상**

- ▷ 다수의 학교 당직기사 근로자들이 명절 등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대체인력 활용 등을 통해

당직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0)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노동법체계 마련**

- ▷ 현재의 노동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근로형태를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에 맞는 입법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41) 부당노동행위 엄단**

- ▷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만연해 있음에도 2014년 상반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이전에 비하여 떨어졌음.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2)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근절**

- ▷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채용 시 우대하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고용세습이 근절되도록 지도·감독할 것.

#### **(43) 민사소송(손배가압류)을 통한 노조탄압**

- ▷ 최근 불법파견, 정리해고(현대차, 쌍용차) 및 노사분규 사업장(KEC 및 노조파괴컨설팅사업장)에서 민사소송(손배가압류)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금액과 가압류(노동조합과 그 가족들의 재산에 대한 것)를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인력수급 부문】**

### **(1) 해외취업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내실화**

- ▷ K-move 스쿨사업은 예산액 대비 해외취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해외취업상담센터를 구축하는 등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300인 이상 대기업 497개소의 인턴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다소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졌음. 사업 참여기준 강화를 검토할 것.
-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대기업에게 인턴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제도가 시행되는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사전 조치가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리 방안 마련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4) 사회적기업 실적 수준 제고

- ▷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상태나 영업이익 등 질적인 측면이 취약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개선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위촉률이 낮고,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6)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대상이 영세사업장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의 임금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
- ▷ 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워크넷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공고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3.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언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제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 ▷ 모성보호제도의 법적·제도적인 수준은 선진국만큼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동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경력단절여성 282명 중 35.1%만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환경이 열악함.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검토할 것.
-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개 중 32.3%인 96개 기관이 현행법보다 낮은 육아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음. 이들 기관이 현행법을 따르도록 지도감독할 것.

## (8) 직장어린이집 내실화

- ▷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중이 47.6%로 저조함.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므로 공공성을 갖는 만큼, 민간에 개방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

## (9) 장애인인권 보호

- ▷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조력자가 없으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10) 고용허가제 개선

- ▷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사업장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
- ▷ 저숙련 외국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전문인력·숙련인력 등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
- ▷ 표준계약서에 정한 것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표준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성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지도·감독을 통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시정 또는 개선할 것.

## (11) 출국만기보험 제도 개선

-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차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받는 일시금은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음. 퇴직금과 일시금의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외국인근로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적발과 제재를 강화할 것.

## (12)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 ▷ 공공기관과 대규모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재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 (1) 산재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 예전에는 노동부가 규정개정을 안 해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통보도 못 받다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것은 고작 한국타이어, 유성기업, 광주기아차 세 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감독을 활성화하여 산재은폐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법에 따른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
- ▷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산재은폐를 잘만 하면 보험료율을 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의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은폐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



- ▷ 롯데건설에서 하청업체(아하엠텍) 근로자의 산재사건을 은폐하였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소관 천안지청 등)의 조사가 미진하였음. 향후 노동부는 이러한 산재은폐에 대해 조사할 것. 또한 롯데건설이 PQ점수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노동부는 이러한 산재은폐를 조사하고 건설사에 대한 PQ점수제도를 개선할 것.

## (2) 산업재해근로자의 업무복귀 문제 해결

- ▷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절반만이 복귀하고 그 중 10명 중 3명은 타 직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 ▷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하도록 하여 산재에 대하여 적절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 (4)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근절

- ▷ 산재보험의 부정수급문제가 심각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율 또한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5) 고용·산재보험 미환급금 업무 개선

- ▷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미환급금 852억 2,600만원이 있었으나 이 중 소멸시효가 도과한 금액만 78억 2,600만원 상당이므로, 사전통지 등 환급처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 (6) 개별사업장 산재 사고 조사 및 대책 마련

- ▷ 대우건설은 작년, 올해 계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산재사망률이 1위이고 중대재해건수가 많으므로, 산재가 예방되고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
- ▷ 현대중공업은 산재사고가 잦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하청업체와 관련한 산재은폐(산재은폐를 위한 외주화)도 문제되었으므로, 산재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은폐가 적발된 병원을 관리하고, 필요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재해율을 낮추고 사고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할 것.
- ▷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결과 회사측이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물량팀 운영)이 오히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조선업은 왜곡되고 불법적인 도급구조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량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물량팀의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7)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

- ▷ 조선업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정립을 포함한 제조공정의 문제, 하도급·장비임대업체 근로자의 안전취약문제,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 등 조선업 전반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기업살인법 제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9)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 ▷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보조도구도 없이 식자재와 음식을 운반해 근골격계질환 발병에 노출되어 있음.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0) 보건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보건의 53명 중 70세 이상이 34명이고, 최고령 보건의는 91세임. 수많은 근로자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로서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1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 강화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의무를 위반율이 높으므로, 적발 시 처벌수준을 높일 것.

## (12) 크레인 줄걸이 작업 관련 산재예방 대책 마련

- ▷ 크레인 줄걸이 작업은 자격제한이 없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검토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근골격계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4)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대책 마련

- ▷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관련 절차 간소화와 보조대상품 정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사고전환, 위험업무의 외주화 근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5)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 ▷ 2013년 전체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업 산업재해가 심각함. 기본 안전수칙 준수 지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계 전반에 대한 점검, 신호수 운영방법 개선, 운전원 등에 대한 교육강화 등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6) 사내하도급근로자 산업재해예방

- ▷ 위험업무의 외주화와 산재예방노력 부족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음. 지속적인 점검·단속 등 사내하도급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 (17) 작업중지권 제도 개선

-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음. 작업중지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

## (18)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 고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PSM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불화수소 등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작업을 도급인가 대상에 포함할 것.
-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할 것.

## (19) 개별실적요율제 보완

- ▷ 개별실적요율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산재은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20) 판매직 사원 산업재해 예방

- ▷ 백화점, 마트 등에서 근로하는 판매직 사원은 대부분 파견근로자로서 산재사건이 발생해도 백화점, 마트 등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고 고위험직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판매직사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예방,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감정노동자 보호

- ▷ 판매원, 골프장 캐디, 항공기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리 철저

- ▷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출장비 과다 지급, 출석기록부 조작 등 국고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할 것.
- ▷ 사업주훈련의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2014년 상반기 2,311건에 이르며, 부정수급액도 35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실업급여 수령중 재입사, 퇴사사유 거짓 신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연간 2,000건에 이르나, 환수율이 65%에 불과하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환수를 독려할 것.

## (2)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 실업급여 수급자 중 46%만이 재취업하는 등 재취업률이 저조하므로,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

## (3) 내일배움카드제 실효성 강화

- ▷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률 연계효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것.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준 실태조사

-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5)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 SK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에서 계열사(하나콤, 컴피아 등)를 통해 광범위하게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금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

## (6)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실시

- ▷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규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사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7) 알바신고센터 이용촉진

- ▷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규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알바신고센터가 71개소나 되나 실적을 보면 무척 저조한 실정인데,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문제 사업장에 대해 적절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많은 법규사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 부당해고관련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9) 장시간근로 실태개선

- ▷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산재은폐(미신고) 사업장 감독 실시

- ▷ 각 노동청은 산재은폐(산재미신고)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적시에 조치하도록 할 것.

## (11) 기간제법 관련 법령위반 감독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쪼개기 계약과 같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 등 법령위반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를 실시할 것.



## (12) 산재예방대책 수립

- ▷ 지청 단위로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전부 시정할 것.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부정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

- ▷ 서울청 관할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호텔 연회장, 음식점 아르바이트 근로감독

- ▷ 청년유니온에서 호텔연회장,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법규위반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나 적절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3)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청소근로자 대량해고사건 조사

- ▷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를 청소하는 2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가 내려져서 노사문제가 심각하므로, 원-하청간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위반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4)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관리 철저

- ▷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잔재물이나 흩날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5) 노무법인 검사 및 감독

- ▷ 건설현장 사망재해 사건에서 상당수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불법행위 정황이 있음. 해당 노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노무법인에 대해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것.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아시안게임선수촌 현장실습생 근로에 대한 조사

- ▷ 아시안게임선수촌 식당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로한 조리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주)아모제푸드 등의 노동관계 법령위반이 드러났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체불임금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2) 출판전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리감독

- ▷ 출판전문 글로벌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보고할 것.

### (3)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근로감독을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

### (4) 임금체불사건 처리방안 모색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사건에 있어서 사법처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절한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 (5) 강원랜드, 태백관광공사의 임금체불 사건 조사

- ▷ 강원랜드, 태백관광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6) 고양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 ▷ 고양지역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7) 속초의료원 노사갈등 해결 필요

- ▷ 속초의료원에 새로운 원장 취임이후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징계가 남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적절히 근로감독할 것.

## **(8) 서울대병원 청소용역 수행회사 근로감독 실시**

- ▷ 성남지청 관할에 있는 태원비엠씨가 서울대병원에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 강요협약 및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9) 케이엔엘KNL물류 근로관계문제 해결**

- ▷ 성남지청 관할에 있는 케이엔엘물류가 용역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승계가 되지 않아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10) 레이테크코리아 특별근로감독**

- ▷ 기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된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할 것.

## **(11) 동양시멘트 하청기업 불법파견문제 해결**

- ▷ 동양시멘트의 하청기업인 (주)동일, (유)두성기업 등은 불법파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관할청에서 이를 조사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방안 마련

- ▷ 부산청 관할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의 설치이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 선박건조업 퇴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필요

- ▷ 올해 7월~9월 선박건조업 퇴사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개월만에 59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는 등 지난 10년간 2천명이 넘는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청이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

- ▷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부산청 근로감독관 1인당 9천여명, 1,012개소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가 부실한 상황인데, 대책을 마련할 것.

### (4) 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해결

- ▷ 부산항보안공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당불이익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5) 현대중공업 산재 사건 과태료 감경 문제**

- ▷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으나, 특별감독 중에 과태료를 임의로 4억원 감액하는 등 시행령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6)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조사**

- ▷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산재발생사실 미신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7)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점검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물량팀 운영과 관련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8)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 정리해고 문제 해결**

- ▷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는 정리해고(구조조정)를 하면서 뒤로는 사업을 외주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탈법적 법령위반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9) 부산합동양조 노동쟁의 장기화로 인한 대책 마련**

- ▷ 적극적인 교섭지도, 집중교섭 중재, 부산지노위와 협업강화 등으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청소·경비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 ▶ 대구지방노동청 청소·경비용역 근로자의 노임단가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시중노임단가 미만) 향후 이를 조사하고 재계약 등에 있어서 고려할 것.

### (2) 직지농협 성폭력·인권유린 사건 조치 촉구

- ▶ 김천 직지농협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유린, 기타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3) 영풍석포제련소 특별감독 실시

- ▶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아황산가스가 검출되었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발생 빈도가 높고 그 유형도 후진적이어서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됨. 관할청은 특별감독 실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 실업급여 수급자 중 46%만이 재취업하는 등 재취업률이 저조하며 광주지역의 재취업률이 가장 낮음.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

### (2) 전남대학교 간호사 유방암 발병 문제 해결

- ▷ 전남대학교 간호사 유방암 발병에 대하여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임시건강진단명령 또는 노사합의 유도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건강(검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 전남대학교 병원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 대전청 관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이 낮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

- ▷ 대전청은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근로감독관 1인당 1만 6천명, 1,625개소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기에, 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

### (3) 현대제철 당진일관제철소 근로문제 해결

- ▷ 당진일관제철소에서 원청-하청업체 간에 발생하는 불법, 탈법행위와 근로시간의 탈법적 운영 등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조치할 것.

### (4)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사 문제 해결

- ▷ 청주노인전문병원은 청주지청에서 특별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법규위반사례를 적발하였는데도 사측이 징계수단으로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어 노사분규가 장기화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5)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특별근로감독

- ▷ 수자원공사 소속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여 해고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적절히 지도감독할 것.

## ▶ 중앙노동위원회 ◀

### (1) 노동위원회 공정성·객관성 제고

- ▶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황을 보면, 법학이나 사회학보다 경영·경제 전공 교수가 많고, 변호사 중에서도 대형 로펌 소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위촉에 주의를 기울일 것.
- ▶ 위원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때에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때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법원에서 각하 처리되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효율이 있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현재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으로는 대기업의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할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사업장규모, 매출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고, 최고액을 상향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개선할 것.

### (3) 차별시정사건 판정문 작성 시 지급금액 명시

- ▷ 차별시정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시해야 함에도 판정문에 누락된 사례가 있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해야 할 금액을 판정문에 명시할 것.

### (4) 공인노무사에 의한 무료 권리구제대리 지원기준 변경

- ▷ 공인노무사 무료선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지원을 받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적시에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최저임금위원회 ◀

### (1) 최저임금위원회의 능동적 업무수행 제고

- ▷ 최근 최저임금수준은 공익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은데, 최저생존임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

### (2)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구원별 생계비자료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1) 재심위의 통계구축과 신뢰성 회복 필요

- ▷ 산재사건의 재심사 신청건수는 증가하는데 취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재심사위원회의 신뢰가 바닥인데다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예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건에 대한 적절한 통계를 구축하고 재심사절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 재심사위원회 심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 ▷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이 많고, 재심위를 거친 경우의 패소율이 재심위를 거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오는 등 재심위의 재심사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도개선할 것.

##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 강화

- ▷ 한국잡월드,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을 성희롱예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실적을 성희롱예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
- ▷ 지사별로 인턴계약직 및 고위직의 성희롱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곳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할 것.

##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을 준수하여 용역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할 것.
- ▷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내용,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전부 시정할 것.

## (3) 청년고용 제고

-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무고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청년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4) 임차료 등 예산절감

- ▷ 공공기관이 호텔 등지에서 토론회, 심포지엄 등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임차료와 수용비 등 지출에 있어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할 것.
- ▷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방치하지 말고 임직원의 공무 출장에 적극 활용할 것.

## ▶ 근로복지공단 ◀

### (1)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 문제 해결

- ▷ 자살, 정신질환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나는데, 최근 아파트경비원 분신자살사건을 보면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절히 조치할 것.

### (2) 부정수급 관련 직원 징계양정 강화

- ▷ 부정수급 비리문제에 연루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정직 이하의 낮은 징계를 하는데, 징계양정을 새로이 만들어 엄격히 적용할 것.

### (3) 안양 산재사건 비리 문제 해결

- ▷ 안양에서 장해등급과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비리자 일벌백계의 원칙을 마련하고 업무(장해판정관련)시스템을 개선할 것.

### (4) 산재보험료 과납액·미환급금 등 관리 강화

- ▷ 산재보험료 중 잘못 걷어 들인 보험료의 적절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 ▷ 고용산재보험의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이 852억 2,600만원에 달했고, 이중 소멸시효가 도과된 금액만 78억 2,600만원임. 사전통지 등 환급처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 **(5) 산재심사시스템 개선**

-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개선이나 법률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할 것.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적용 확대**

- ▷ 건설기계(장비운전원 포함)·화물자동차 자차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보험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 ▷ 롯데 스카이힐CC 경기보조원 26명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회사 등 관련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후조치하고, 제외신청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7)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구성 및 소속의사 급여체계 개선**

-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구성을 보면 임상의 비중이 크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 공단 산하 병원들이 적자상태에 있는데, 의사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해당 의사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편할 것.

#### **(8) 사무장 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보완**

- ▷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적발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 **(9)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

- ▷ 재활공학연구소의 일부 연구원이 9년간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

#### **(10)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인정기준 개선**

-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인정기준에 있어 근로시간, 노동강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강도, 업무량, 정신적 긴장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유연하게 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 **(11) 산재보험가입의무 활성화**

-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의무 위반 건이 최근 3년간 20만건에 이르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자진가입을 꺼리고 있으므로 가입률 제고에 힘쓸 것.



## (12)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 진상조사

- ▷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안정 중 일부(총 16건 중 7건)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을 기재한 것으로 제보되어 확인결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문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 바, 향후 업무상 질병판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13) 산재병원 경영수지 악화 대책마련

- ▷ 산재병원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쁜 편이므로 수지악화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

## (14) 외국인 근로자 귀국 후에도 산재인정 검토필요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근로자가 귀국한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를 고려하여 산재신청방법 등을 적절히 홍보할 것.

## (15)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선

-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환자 의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인력 확충

- ▷ 폐질환 관련한 산재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폐질환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 ▷ 산재보험의 부정수급문제가 심각하며(3년간 1만 1,710명, 963억 상당) 부정수급의 45.8%가 공단의 실수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8) 구상권 행사를 통한 체당금 회수 강화

- ▷ 임금체불문제에 있어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9,500억원에 이르고 상당히 많은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구상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 (19) 화상약재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적정성 검토

- ▷ 케라힐, 홀로덤 등의 화상약재에 대하여 가격결정이나 급여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인부담여부나 약재가격재산정필요 등을 검토할 것.

## (20) 근로자 대상 용자사업 개선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 매년 상당히 많은 금액(5년간 83억)이 대손상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손을 줄이고 사업을 건전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

## (21)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 해소

- ▷ 산재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늘어나서 불복이 상당히 많고 나중에 다시 기각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므로, 공정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를 상세히 안내할 것.

## (2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인력 확충

-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산재병원은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정 인력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어 이러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3) 산재장해등급 조정 관련

-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재결정(재판정)을 통해 산재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 경비원 등 대부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는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 (2) 울산공업단지 산재예방대책 마련

- ▷ 울산공업단지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3)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 ▷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격려금을 지출할 때 현금지출을 축소하고 지출증빙을 의무화할 것.

### (4) 제도 취지에 맞는 개방형직위제 운영

- ▷ 민간의 우수한 인력을 도입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공단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방형직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므로, 직접교육 실시 등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 또는 제거하는 작업에는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은데, 작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절반 이하가 B등급 이하를 받고 있음. 안전성평가 강화 등 석면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7)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련 제도개선**

-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령 위반이 과다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안전관리용역과 그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검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와 안전검사의 분리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 산재예방요율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 ▷ 산재예방요율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실제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 등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9) 서비스업 산재예방 대책 마련

- ▷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재해율 증가속도가 빠르고,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서비스업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직원 전문성 및 조직몰입도 향상

- ▷ 전문성을 갖춘 공단 직원들의 이직이 줄지 않고 있음.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

### (11) 감정노동자 보호

-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것.

### (12) 케이블설치 노동자 보호

- ▷ 케이블설치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안전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음.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KOSHA CODE에 포함시키는 등 케이블설치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질식재해 예방

- ▷ 질식사고로 인한 재해재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수칙 지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4) 발암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

-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센터 전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 **(15)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의 불균형 해소**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및 산재예방시설용자 실적을 보면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자금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6)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범위 확대**

- ▷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의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인증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노후장비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불합리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것.

#### **(1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기준 개선**

-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르면 특정 항목의 점수가 낮아도 총점이 높으면 양호등급을 받을 수 있음. 항목별 커트라인을 두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18) 산재은폐 근절대책 마련**

- ▷ 공단 차원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기능장 시험 부정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 기능장시험장소 중 60%가 폴리텍대학이며, 감독관의 11.6%가 폴리텍 소속 직원인 등 구조적으로 인력공단이 기능장 시험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근본적인 시험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폴리텍에 시험을 위탁하지 않도록 실기시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시험장을 확보할 것.
- ▷ 규정상 해당 시험장 소속 교직원은 시험을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험장의 폴리텍 대학 소속 교직원이 시험을 관리 감독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인력공단 전문위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동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을 엄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 한국폴리텍 의존 최소화

- ▷ 인력공단이 자격검정사업의 많은 부분을 한국폴리텍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폴리텍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부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존을 최소화할 것.



### (3) 해외연수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 2013년도 해외연수지원사업의 취업률 및 연봉수준도 저조한 등 성과가 미흡하므로, KOTRA, 대사관, 교민회 등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해외취업홍보를 강화할 것.
- ▷ 해외인턴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업이 인턴에게 현장실습 제공의 명목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실습지시를 할 수 있는 구조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해각서 등에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조항을 넣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전세계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해외취업상담센터를 구축하는 등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 군모범장병에게 해외인턴추천을 할 것.
- ▷ K-Move 스쿨에 참여한 일부 기관은 참여학생을 사전에 제안된 취업처가 아닌 대체 취업처에 취업시키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취업애로청년층지원 사업은 목표인원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이 2.7%에 불과하고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 또한 예산집행률이 낮음. 취업률 및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중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 수 있으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기준 중 노동관련법 위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
- ▷ 인력채용수요가 있다고 밝힌 193개 기업 중 실제 신규채용한 기업은 3개 기업, 총 신규채용인원 4명에 불과한 등 사전수요조사의 의미가 없음. 이러한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본부에서 지사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관리를 이관하는데, 0.8명이 5,000억원에 이르는 훈련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취업사관학교 후 취업에 성공한 학생 중 61%가 퇴직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므로, 취직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5)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국가기술자격의 재위탁으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위탁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법적 근거없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위탁 여부를 재검토할 것.

-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
- ▷ 실기시험의 채점부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채점기준 사전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국가자격증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기업들이 채용에 반영하는 자격증별 시험 종합정보를 구축하고 ‘국가기술자격 상시 효용성평가 지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을 받으면, 참여사업주에게 차년도 외국인근로자 신청시 0.2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주 참여를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도 동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
- ▷ EPS센터에서 미청구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할 것.
- ▷ 출국 후 출국만기보험 수령이 어려운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EPS센터장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송출국가 정부부처를 상대를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바, 이들의 대우를 준외교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7) EPS센터 산업재해 접수방안 강구

- ▷ EPS센터에서 산업재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8) 여성임원 확대

- ▷ 인력공단 1,200명 직원 중 여성인력의 비율은 35%이나 1급 이상 고위직은 2명에 불과하므로 여성임원을 확대할 것.

## (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통폐합

- ▷ 기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와 신규 중장년 취업아카데미가 유사 중복되므로 통폐합할 것.

## (10) 용역업체 지원체계 개선

- ▷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11) 대한민국 명장 활용방안 마련

- ▷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자를 국가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 (12) 군산지사 신설

- ▷ 군산 산단지역 인근에 산업인력공단 지사 설치를 검토할 것.

### (13) 초단시간근로자 활용 시정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시정할 것.

### (14) 외국인근로자 노인요양보험 납부예외제도 홍보 필요

- ▷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요양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교육시 이를 고지할 것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환

- ▷ 현재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 훈련체계를 유지하면 성과가 저조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사회적기업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창업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편을 할 것.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최근 4년간 1,363개 사업참여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비율이 0.6%에 불과한 등 실적이 저조함.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개별적·탄력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 정부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적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 판로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

- ▷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것에 대해 사회적기업가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4)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성과 미흡

- ▷ 경영컨설팅에 집행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면밀한 추진

- ▷ 정부가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면밀히 추진토록 할 것.

## ▶ 한국폴리텍대학 ◀

### (1) 취업의 질적 제고

- ▶ 미취업자를 단순직에 취업유도하도록 하는 등 양적인 수치 상승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안성캠퍼스 전환예산 확보 노력

- ▶ 안성 여자캠퍼스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사업 관리 강화

- ▶ 폴리텍에서 수행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사상품을 소개하는 불법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것.

### (4)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 근절방안 강구

- ▶ 자동차정비기능장과 관련하여 필답고사에도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폴리텍이 시험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폴리텍 시간강사가 시험감독을 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교수의 계약갱신시 제자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짐. 실적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5) 현장실습생 보호대책 강구

- ▷ 폴리텍에서 연간 10,133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주 50시간 근무하는 사례도 있는 등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 (6)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 ▷ 2005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폴리텍이 패소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인사규정 면직사유에 노동운동이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므로 즉시 시정할 것.
- ▷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것.
- ▷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의 보수수준을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향상할 것.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교원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보수는 교원의 90%에 불과한 바, 이를 개선할 것.



## (7) 교직원에 대한 엄정한 관리

- ▷ 부당한 행위를 한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바,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것.

## (8)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

- ▷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 (9) 학생의 정치단체 가입 및 활동금지 규정 개정

- ▷ 한국폴리텍대학 학칙은 정치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바 시정할 것.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직업교사 양성 노력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목적이 직업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생 중 4.2%만이 직업교사가 되는 것은 설립목적과 괴리되어 있음. 직업훈련의 형태가 과거 집체교육에서 기업현장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수요를 감안하여 직업교사양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

## (2) 현장실습생 보호대책 강구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2년간 500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일반대학에서의 현장실습생보다 처우 등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평균 85만원의 수당을 받고 일하는 등 아직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 (3) 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해소방안 마련

- ▷ 기업이 학교와 장기현장실습제도(IPP) 협약을 체결하고도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아 참여실적이 전무한 기업이 64.9%에 이르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확대

- ▷ 특성화, 마이스터교의 학생들이 참여식으로 청소년 노동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것.

## (5) 학생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개정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 단체 및 학생활동 지도 시행 지침’은 학생들의 정치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바 시정할 것.

##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인 252일, 60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수가 상당하므로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 투자관리시스템 정립

- ▷ 과거 투자관리시스템이 미비하여 발생한 부실 대체투자상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현재 시점으로 부실의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나 관리상태의 취약점을 조사할 것.

### (3) 공제부금 누락 방지 위한 시스템 강화

- ▷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 신고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4) 퇴직임원의 재취업 관련 청탁의혹 조사

- ▷ 과거 공제회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임원이 재취업을 청탁한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 법인세 신고 오류 관련 방안 마련

- ▷ 과거 법인세 신고 오류 관련 내부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6) 외부위탁 관련 문제 시정

- ▷ 공제회에서 외부위탁 중인 회사의 장애인부담금 대납을 중지하고 위탁업체의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시정되도록 할 것.

# ▶ 한국고용정보원 ◀

## (1) 고용창출효과 조사체계 개선

-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분석용역에 참여한 연구자 중 일부가 연구의 객관성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 있는 자가 선정되었으므로, 향후 고용영향평가 연구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객관적 선정에 유념할 것

## (2) 외국인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선

- ▷ 외국인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메뉴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동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도록 할 것.

### (3) 신직업 개발 체계 개선

- ▷ 이익단체 및 부처간 갈등으로 신직업이 시장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직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4) 개인정보 관리 강화

- ▷ 일부 기업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등록하여 국고를 불법 편취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5) 워크넷 내 구인광고 관리

- ▷ 워크넷에 있는 구인광고 중 일부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을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워크넷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이 같은 구인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
- ▷ 워크넷이 취업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6)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 관리 강화

-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중 20개소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인증취소할 것.

## (7) 무등록 직업안정기관 관리

- ▷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한국잡월드 ◀

### (1) 협력업체 직원 처우 개선

- ▷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2) 간접고용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 ▷ 소속 근로자는 48명인데 반하여 간접고용근로자는 335명에 이르는 등 간접고용이 과도하므로, 이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
- ▷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가 안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 직원이 직업소개를 하도록 할 것.

### (3) 자체수입 확보 노력

- ▷ 광고수입 등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4) 미래유망직업 소개 보완

- ▷ 한국잡월드의 미래 유망직업에 대한 소개가 빈약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5) 고객만족도 제고

- ▷ 고객만족도가 보통에 불과하므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 청소년의 직업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래 유명 직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할 것.

#### (6) 직업 체험의 다양화

- ▷ 대기업 중심의 직업체험이 아닌 다양한 직업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찬광고 유치시 중소기업의 범위를 늘릴 것.

#### (7)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 강화

- ▷ 주관람객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사고에 초동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처치교육 등을 강화할 것.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업체가 증가(2012년 12개소, 2013년 18개소, 2014년 상반기 8개소)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공단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2)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 ▶ 국내 30대 민간기업 중 2013년 말 기준 의무고용률 2.5%를 충족하는 기업이 5곳에 불과하고, 연중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이 29곳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률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해당기관이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고용노동부와 검토할 것.
- ▶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큰 폭으로 늘려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3) 보조공학기기 재활용률 향상

- ▷ 보조공학기기는 매년 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반납된 보조공학기기 재활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4) 비상사태시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개발

-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공단에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 ▷ 표준사업장 관리 규칙에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방식 개선

-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에서 장애인 부분은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이므로 공단이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 (7) 이사회 노동계 인사 참여 방안 마련

- ▷ 2006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의사결정기구에 노동계 참여를 권고한 바, 장애인공단 이사회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8) 장애인공단 BF 인증 필요

- ▷ 장애인공단은 BF(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임에도 지금까지 BF인증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BF인증을 위해 공단이 먼저 인증을 받도록 할 것.

## (9)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 후 적응지도’ 개선

- ▷ 장애인의 경우 사례관리형태의 적응지도가 매우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적응지도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적응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
- ▷ 특수학교(급) 고등부 장애학생 취업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고용 이수자에게만 직무지도원을 통한 적응지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취업에 성공한 장애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노력 필요

- ▷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데, 홍보나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기업들이 꺼리고 있으므로 공단에서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

## (11) 민간훈련 위탁기관의 평가 지표 개선

- ▷ 민간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재선정심사에 취업률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취업자 항목에 조기취업자를 산입하는 등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 (12)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68.4%로 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은 문제인 바, 공단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범위 확대

- ▷ 비장애인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에서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위 입상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14) 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 확충

- ▷ 신규로 설치되는 「서울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능력개발센터」의 핵심인력인 교사 및 직업평가사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노사발전재단 ◀

## (1)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성과 제고

- ▷ 사업장 자율진단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 비해 실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많지 않음. 지원단 운영을 통해 차별적 처우의 시정·해소로 이어지는 실적과 성과를 높일 것.

- ▷ 지원단 인원과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역사무소 직원 중 다수가 정원 외 인력이며, 현재의 사업은 형식적이고 실적이 부진함. 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확대를 추진할 것.

## (2) 중립적 직무수행

- ▷ 대표이사장이 해외출장 시 특정 매체 직원만 동행토록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화

- ▷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 일터혁신컨설팅의 위법성 제거

- ▷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 내용 중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향후 컨설팅 수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

## (5) 시간선택제일자리 컨설팅 내실화

- ▷ 실제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창출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비중을 높여갈 것.

##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 실효성 제고

- ▷ 현재 AA 관련 데이터는 기업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등 오류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음.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여성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

## (7) 중장년층 취업률 제고

-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한 구직인원은 증가했으나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구직수요가 높은 고령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확보 노력 등 중장년층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8) 컨설팅 대상 업체 자격요건 재정비

- ▷ 정부지원 없이는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은 지양하는 등 사업장 자격요건을 재정비할 것.

## (9) 컨설팅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 재단 퇴직자가 설립한 컨설팅업체와 과다하게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10) 동일지역에 소재한 사업별 센터 통합

- ▷ 서울, 대구, 전주 등지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용자편의를 위해 통합할 것.

## (11)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제도 개선

- ▷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 고용허가제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노사발전재단(몽골, 베트남, 태국)과 중소기업중앙회(몽골, 베트남, 태국 이외 12개국)에서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2) 노사발전재단 운영에 있어 노사의 역할과 지원 확대

- ▷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이 정부의 보조 또는 위탁에 의한 것임. 노사발전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정부의 비중은 다소 줄이고 노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

## ▶ 승강기안전기술원 ◀

### (1)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근절

- ▷ 전세등기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망실하고도 당시 책임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제대로 구상을 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집행하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경조사비 지출규모가 과도한 데다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만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 향후 회계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과 임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할 것.

### (2)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 ▷ 정기검사 후 얼마 되지 않거나 검사결과 합격 또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음. 승강기 검사기준에 미비점이 있는지 분석·과약하여 주무부처에 건의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 (1) 중복업무 수행하는 재단법인 통합 필요

- ▷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5개는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수시로 과제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분야별로 과제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호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으므로 통합 운영할 것.

##### (2) 기상장비 도입 비리의혹 등으로 기상청은 환골탈태 필요

- ▷ 라이다 사건 과정에서 기상청은 국민에게 ‘비리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기상산업 발전과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상업계는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기상청장은 이번 기회에 기상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할 것.

##### (3)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 필요

-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직개편 및 공직기강 확립, 보안관리예산 확대, 불용품 처리기준 마련, 자체 연구용역사업 규정 개정, 민간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속하게 조치할 것.

##### (4) 용역계약 과정 개선 및 대상 축소 필요

- ▷ 모든 용역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단순 행사는 용역계약을 지양하고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



## (5) 기상청 출연기관 R&D 사업 개선 필요

- ▷ 기상산업 지정공모과제가 증가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모과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정과제·학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정공모과제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각종 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 발생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 ▷ 건물 준공 지연, 장비도입 지연으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나 사후 사업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것.

## 【기상 장비 관련 사항】

### (1) 기상관측기기에 대한 적극적 검정 필요

- ▷ 기상청장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를 사용한 기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전체 기상관측기기 중 43.9%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났을 정도로 소극적이므로 시정권고조치를 취하고 향후 기상관측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2)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의 신속한 추진 필요

- ▷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복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상청은 효율적인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해 다른 관측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 USN 관측장비 부적절한 설치 시정 필요

- ▷ 제주도에 USN 관측장비를 많이 설치하였으나 중복이 많고 관측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설치되어 평균 기기운영율이 35%에 불과한바, 제주지역에 설치한 USN 기반 기상관측시설에 대해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

### (4) 해양기상관측장비 구매시 제품의 평가 철저 필요

- ▷ 해양기상관측장비는 연평균 고장일수가 한 달이나 되어 해상예보 및 특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 구매시 연구진 외에도 현장전문가를 섭외하여 제품 자체의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할 것.

### (5) 기상 라이다 도입 관련

- ▷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다를 운영하여 발주 당시의 규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것.
- ▷ 라이다 관련 사용한 변호사 항소심 비용 1억 1,250만원의 산정기준과 예산전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김포와 제주에 설치된 라이다 입찰은 케이웨더가 애초 입찰에 응할시 납품실적 증명에 있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산업진흥원이 잘못된 계약을 하게 한 것이며, 입찰참가 조건에도 맞지 않은 기업이 참여한 것인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취할 것.

## (6) 기상관측장비 AWS운용 개선 필요

- ▷ 옥상 등에 설치된 AWS에 대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조속한 재설치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옥상 등에 설치된 AWS가 상당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강우량을 측정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경우 전국적으로 570대가 설치된 반면 적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현재 전무한바, 효율성과 실시간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적설관측 자동화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7) 기상장비 유지보수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필요

- ▷ 기상장비 유지보수의 재위탁 사업 시 불공정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 (1) 기상직 채용시험 공신력 제고 필요

- ▷ 매년 기상직 9급 공채시험 문제 오류로 공신력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기상분야 출제위원들의 전문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국지성 집중호우 전문예보관 양성 필요

- ▷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전문 예보관을 양성하여 기상청 호우예보능력을 강화할 것.

### (3) 고위직 여성관리자 목표달성을 위한 준비 필요

- ▷ 2017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이 정부조직 15%, 공공기관은 18.6%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

### (4) 화산·지진관련 연구사 충원 필요

- ▷ 기상연구소의 지진담당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 연구원들은 행정업무까지 하면서 연구를 2~3개씩 맡아 수행하고 있어 화산과 지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인력 충원에 적극적 노력을 할 것.

### (5) 개방형 직위 운영 등 인사운영 개선 필요

- ▷ 개방형직위를 승진 수단으로 이용 및 기상산업진흥원 감사 선발에 전문성 없는 인사의 임명 등 인사운영상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직원간 화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

### (6) 기상산업진흥원의 인력운용 재정비 필요

- ▷ 기상관련 업종 통합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각 업종 별로 인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력기준이 강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한 번의 낙하산 인사라도 조직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7) 공공성과 전문성 훼손우려 조직개편 계획 재검토 필요

- ▷ 기상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45개 기상대 중 13개만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 기상대 32개는 폐지할 계획임. 기상대의 기능 중 관측·서비스 기능은 지역기상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며 동 센터는 한시적인 기관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나, 기상청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퇴직직원 친목모임(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관측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기상청은 전문성과 공공성의 저해가 우려되는 현재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기상행정/교육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 (1) 정보보안 대책 마련 필요

- ▷ 각종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킹 보안 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바, 해킹 침해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망분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수행되어 기상산업진흥원은 사업대상이 아니지만, 작년에 해킹 사건이 있었던 만큼 보안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망분리 사업에 각별히 신경 쓸 것.

## (2) 기상기후아카데미 훈련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 기상기후아카데미의 훈련기관 취소(10월 2일) 직전인 9월 17일 기상청은 외국인 기상예보관 교육 용역계약을 기상기후아카데미와 체결한바, 동 용역계약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것.
- ▷ 기상청은 아카데미처럼 부정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이 된 경우 소극적으로 지정 취소만 할 것이 아니라, 신규계약 체결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
- ▷ 기상기후아카데미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후에 기상청 건물에 입주해서 있을 명분 없으니 조치를 취할 것.

## (3) 기상교육 전문 강사 확보 강구

- ▷ 기상전문교육을 위해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기상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활용 후배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

## (4) 기상학과 졸업생 취업률 제고 대책 마련

- ▷ 기상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기상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관련 분야가 빈약하고, 취업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므로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보/특보 관련 사항】

### (1) 효과적인 폭염지수 개발 및 폭염특보 운영 필요

- ▷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따라 폭염에 의한 영향이 다르듯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에 대한 상세한 폭염지수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개발과정에 일반적인 보건전문가보다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것.
- ▷ 지역별 폭염문자 서비스 대상자 수가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온열환자 발생 비율과 일치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폭염 취약지역 우선 문자서비스 실시 등 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선진국들은 종합적인 열 환경요소인 기온, 습도, 일사량 등을 통해 객관적인 WBGT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수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
- ▷ 열지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개선할 것.

### (2) 기상특보 정확도 제고방안 마련

- ▷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고, 특히 특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정확도 산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기상특보의 정확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검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제외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 **(3) 안개특보 개선방안 마련**

- ▷ 안개특보를 5년이 지나도록 현업화하지 못하고 내부 시범운영만 하고 있는바, 안개특보 시행 대책을 마련할 것.
- ▷ 상세 안개기상정보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의 활용 및 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바, 안개예보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4)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제공사업 범위 확대 필요**

- ▷ 수도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농촌지역 취약계층, 나아가 전 수요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 미숙자 등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5) 이안류 예보시스템 보완 필요**

- ▷ 최근 이안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예보정확도가 2013년 76%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안류 예보시스템을 보완할 것.

### **(6) 태풍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 ▷ 한국, 미국, 일본 태풍센터의 태풍위치에 대한 분석이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데, 외국에서는 태풍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태풍위치, 강도 등을 재분석한 베스트트랙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도입을 검토할 것.



### (7) 용오름 등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고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용오름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관측·예보 태세를 갖추는 것.

### (8) 공항 예·경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공항 이용객이 많은 인천·제주공항 등의 예·경보 점수가 하락추세에 있고, 항공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풍경보 점수가 특히 낮는데 대한 공항 예·경보 정확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9) 웨비게이션 사업 지속 추진방안 관련

- ▷ 현재 TPEG-WEA 는 추진중이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실효성이 높은 TPEG-RWI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화산 관련 사항】**

### (1) 지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재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신속한 지진 속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관측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정비하는 등 속보 시스템의 도입에 노력할 것.

- ▷ 지진정보를 원자력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여 효과적인 지진 예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현재 국립기상연구소의 지진연구는 지진 대응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없고, 원자력발전소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 가장 위험하고 최근 몇 년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진연구를 조속히 시작할 것.

## (2) 화산 폭발 대응방안 연구 필요

- ▷ 백두산과 한라산도 활화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예측불가능한 화산폭발에 대한 준비와 대응방안을 점검할 것
- ▷ 일본 온타케산 화산폭발은 ‘대형 화산폭발’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임에도 기상청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바, 화산정보 보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용역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사항】

### (1) 청소 등 용역직원 근무여건 개선 필요

- ▷ 기상청 차원에서 청소 및 시설용역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고 전체적 근로조건을 통일시키고, 관리지침을 만들 때 정부지침인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용하고 표준과업지시서를 통해 불합리한 조항들을 삭제할 것.
- ▷ 고용승계에 있어서 매년 계약을 맺는 것은 연말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므로 용역계약을 2년 단위로 맺고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

- ▷ 간접고용자(경비원, 청소원)들의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2) 기상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 ▷ 기상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량 과다, 저임금, 악성 민원 해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기상콜센터 파트타임어의 시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점 (7~9천원), ‘비상시 근무가능’ 이 계약에 포함된 점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지방기상대 근무직원의 처우개선 필요

- ▷ 지방기상대의 특성상 도심, 주택가와 떨어진 상대적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

## (4) 용역근로자의 노동처우 시정 필요

- ▷ 광주지방기상청 용역근로자 과업지시서 상으로 노동절 휴일을 공공기관 휴일 규정에 따라 정상근무 하도록 하였는데,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용역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거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시정하도록 할 것.

## 【기타 사항】

### (1) 기상청이 선박 출항관련 가시거리정보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마련

- ▷ 선박출항 통제권자는 기상청, 해양수산부 등 여러 기관의 가시거리 정보로부터 선박통제를 결정하지만 기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가시거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 기상산업 분야의 독과점 형태 개선

- ▷ 기상산업 등록 218개 업체 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51%, 10개 업체가 전체의 84%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독과점 형태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입찰평가 방법을 주관적인 방법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것.
- ▷ 기상청 3개 기관 독점으로 불용품 처리업체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바,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할 것.

## (3) 기상장비분야의 민간 이양 확대 필요

- ▷ 기상산업진흥원은 민간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안정적인 관측망 운영 및 기상관측자료의 공공성 유지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산업 진흥이라는 원래 기관 설립 목적에 충실할 것.

## (4) 날씨경영인증 관련 민간참여 활성화

- ▷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날씨경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기상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획득에 인증 목적이 있는 공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 홍보방안 마련 등 순수 민간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5)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정확성 제고 대책 마련

- ▷ 각종 언론 및 보고서에 100년간 전지구는 0.8도 상승하고, 한반도는 약 1.8도 상승해 지구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연구 등을 통해서 한반도 기후변화 정보가 언론과 유관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

### (6) 기후변화감시 적응시스템을 구축

- ▷ 기후변화감시는 기상청, 대응은 환경부라는 이원화가 개선되어야 하므로, 다른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관된 기후변화감시 적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

### (7) 가뭄피해 대응체계 마련

- ▷ 기상청의 가뭄전망정보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가뭄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8) 연구용역 평가 공정성 확보 및 결과활용 제고

- ▷ 연구용역 사업 평가위원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연구과정 산출물들을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는 R&D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노트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 (9) 도시농림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도시농림사업단은 현재 「기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단을 대학으로 보낼 경우의 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10) 원전 방사능확산모델링 결과 공개 및 원안위 협업 필요

-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방사능확산 모델링 실패로 인해 동 아시아특성에 맞는 방사능확산 모델링기법을 개발하였으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현업적용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국민과 관계기관에게 제공하여 각 기관이 방사능비상계획 등 원전사고 대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